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34
------	----

2022. 7. 20.
기획경제위원회

I.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7월 14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22년 7월 14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11회 임시회】

-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2022.7.20)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원안 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민선 8기 서울시정 조직개편 및 시정 핵심과제 추진 역량 강화를 위해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시정 핵심사업 추진을 위한 기구 개편 및 소관사무 이관·확대 등

기능 조정

- 기획조정실 내 ‘공공자산 운용’에 관한 사무 신설(안 제5조)
 - ‘시·도간 교류 및 대외협력’ 사무는 기획조정실 → 행정국
으로 이관(안 제13조)
- 경제정책실 내 ‘뷰티 산업 육성·지원’,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사무 신설(안 제6조)
 - ‘도시·농촌 간 상생·협력’ 사무는 경제정책실 → 행정국으로
이관(안 제13조)
- 복지정책실 내 ‘안심소득 추진’에 관한 사무 신설 (안 제7조)
 - ‘중장년층 경제활동, 사회참여, 교육, 여가 지원’ 등 사무는
복지정책실 → 평생교육국으로 이관(안 제12조)
- 도시교통실 내 ‘미래첨단교통’에 관한 사무 신설(안 제8조)
 - 철도계획 관련 기능 일원화를 위해 ‘도시철도건설 민자
유치’에 관한 사무를 도시기반시설본부 → 도시교통실로 이관
(안 제52조)
- 기후환경본부 내 건물 온실가스 감축, 친환경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확충, 자원회수시설 건립 추진 등 기능 강화(안 제9조)
- 문화본부 내 ‘문화재 복원·관리’ 기능 강화 및 사무분장 정비
(안 제10조)
 - ‘디자인 진흥’ 관련 사무는 문화본부 → 디자인정책관으로
이관(안 제14조의2)
- 시민건강국 내 ‘공공의료 강화·추진’에 관한 사무 신설
(안 제12조의2)

- ‘동물보호 및 수의공중 보건’에 관한 사무는 시민건강국
→ 푸른도시여가국으로 이관(안 제19조)
- 행정국 내 ‘지역공동체 지원’, ‘사회협력’, ‘시·도간 대외 협력’, ‘남북교류협력’ 등에 관한 사무를 신설하여 각 분야별 협력 기능 일원화(안 제13조)
 - 행정국 내 ‘정보공개·문서·공인·기록물’ 관련 사무 삭제 (행정시스템 운영 기능 일원화를 위해 디지털·정보화 전담 기구로 업무이관)
- 안전총괄실 내 ‘중대재해 예방·안전관리’ 기능 강화, ‘보도 관리 및 보도환경 개선’에 관한 사무 신설(안 제15조)
- 주택정책실 내 임대주택·청년주택 등 공급 기능 강화 및 조문 정비(안 제16조)
 - ‘주거재생, 주거환경 정비’ 및 ‘한옥 보존·진흥’에 관한 사무를 균형발전본부 → 주택정책실로 이관(안 제18조)
- 녹색여가 시대 전환을 위해 ‘푸른도시국’ → ‘푸른도시여가국’으로 개편(안 제19조)
 - 녹지공간을 활용한 ‘공원여가문화 프로그램 기획’ 등 관련 사무 신설
- 물순환안전국 내 ‘하천 이용 수변문화공간 조성’ 등 사무분장 정비(안 제20조)
- ‘공원녹지사업소’ → ‘공원여가센터’로 개편하고, 안정적인 공원관리 및 대시민 여가서비스 향상을 위해 ‘북부공원여가센터’ 신설(안 제92조 및 제93조, 별표 4)

- 북부공원여가센터 신설에 따라 각 4개 센터의 위치, 관할구역 조정
- 감사·조사기능 일원화를 위해 인권담당관을 감사위원회 산하로 이관(안 제124조)

나. 자율신설기구 재편 및 존속기한 연장(안 제4조 및 부칙)

- 디자인·도시경관 정책 수립·조정기능 강화를 위해 ‘디자인정책관’ 신설
 -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시민협력국 폐지하고 관련 기능은 기획조정실·행정국 등으로 이관
- 기존 자율신설기구인 경제일자리기획관·복지기획관의 존속기한 연장(2년)

다. 주택공급, 권역별 특화발전 및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 등 시정 핵심과제 추진을 위한 한시기구 신설(안 제21조 및 부칙)

- (신설) 주택공급기획관·균형발전기획관·자원회수시설추진단 신설
 - 행정안전부 협의를 거쳐 존속기한 1년으로 설치
- (폐지) ‘남북협력추진단’은 존속기한 만료(’22.10.31) 예정에 따라 폐지
 - 관련 기능은 행정국으로 이관

Ⅲ.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가. 개정안의 개요

- 개정안은 민선 8기 정책 목표와 핵심과제의 실행력을 확보하고, 시정 환경 변화 등에 따라 정책수요가 감소하는 분야의 조정·재편으로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조직체계를 마련하고자 제출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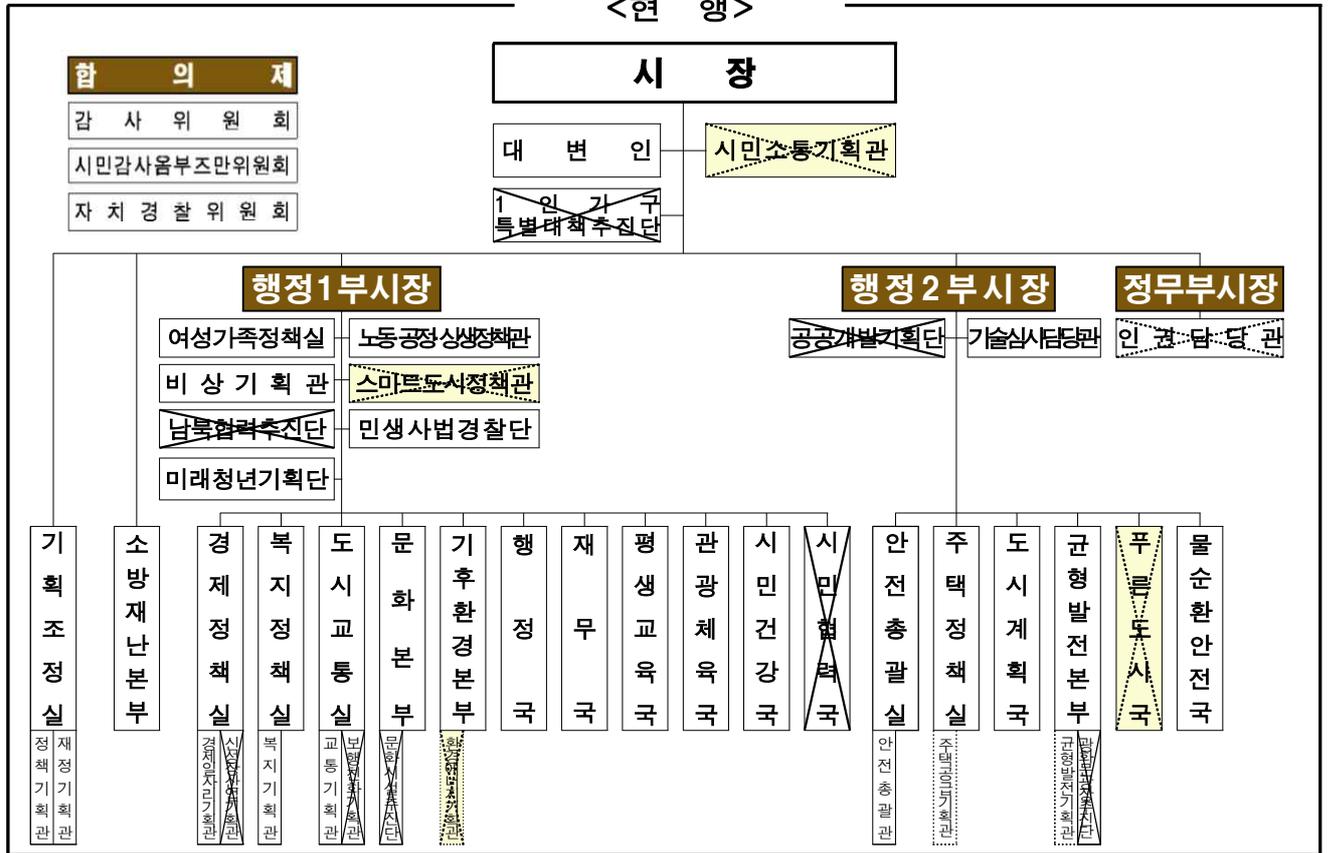
나. 조직개편안 주요 내용

-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는 민선 8기 시정 운영방향으로 ‘약자와 동행하는 상생도시’, ‘매력있는 글로벌 선도도시’를 제시하고, 시정 핵심사업의 실행력 강화를 위한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하고자 조직 개편안을 마련함.
 - ‘약자와의동행추진단’ 등 시정 역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기구를 신설하고, 정책수요가 감소하거나 사업이 안정화된 분야는 조직을 축소 조정해 기능 강화가 필요한 분야에 재배치함.
 - 이로 인해 서울시의 조직체계는 현행 6실 4본부 11국 13관·단 5과장·담당관 3임시기구에서 6실 4본부 11국 15관·단 5과장·담당관 1임시기구로 개편됨(+2관 △2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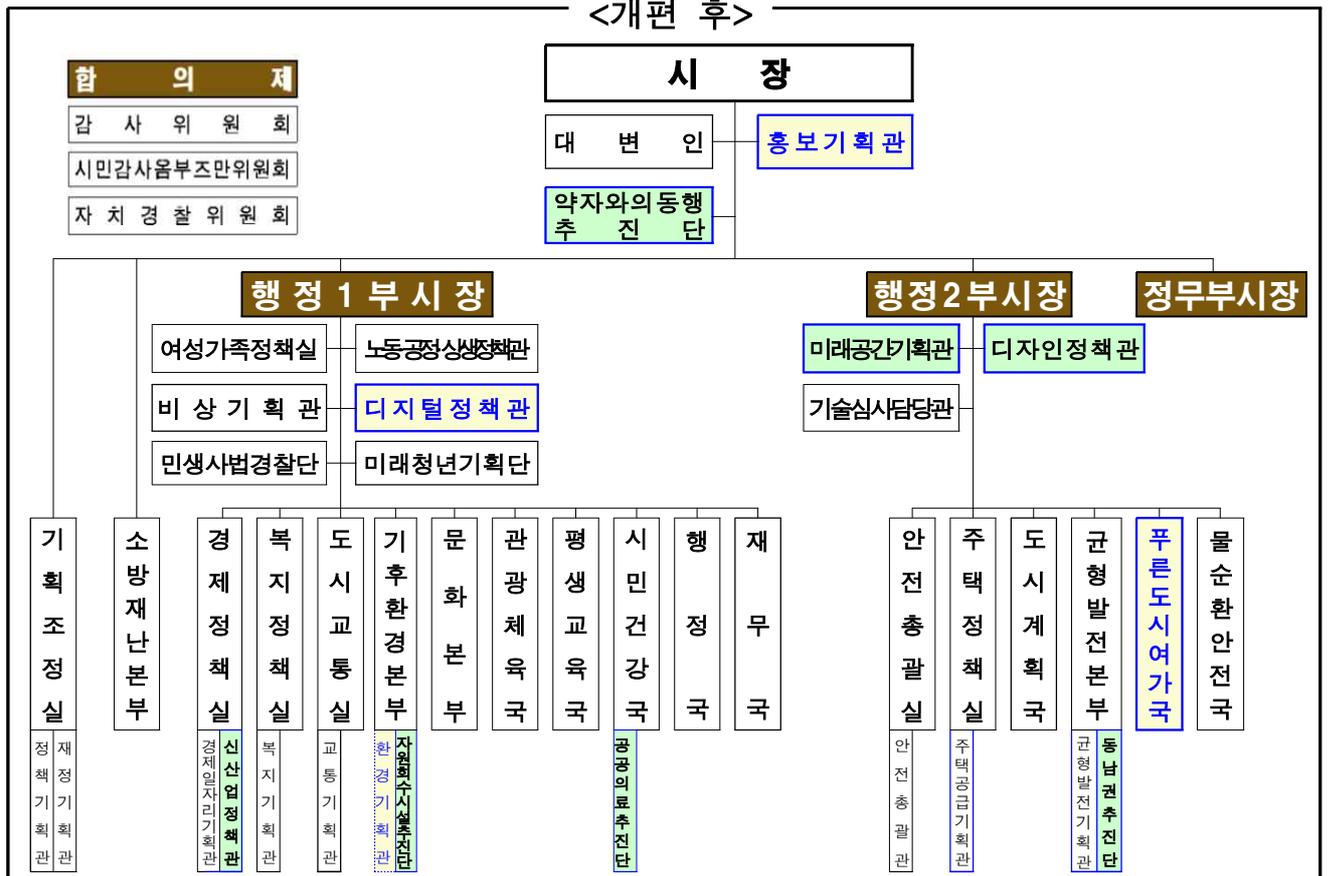
< 서울시 조직체계 개편 내역 >

구분	현 행		개 편 안	
	직급	6실 4본부 11국 13관·단 5과장·담당관 3임시	직급	6실 4본부 11국 15관·단 5과장·담당관 1임시
실 (-)	1급 (6)	기획조정실, 경제정책실, 복지정책실, 도시교통실 안전총괄실, 주택정책실	1급 (6)	변동없음
본부 (-)	소방 정감 (1)	소방재난본부	소방 정감 (1)	변동없음
	2·3급 (3)	문화본부, 기후환경본부, 균형발전본부	2·3급 (3)	변동없음
국 (-)	2·3급 (9)	행정국, 재무국, 평생교육국, 관광체육국 시민건강국, 도시계획국 푸른도시국, 물순환안전국, 시민협력국(자율)	2·3급 (11)	행정국, 재무국, 평생교육국, 관광체육국, 시민건강국, 도시계획국 푸른도시여가국, 물순환안전국, 디자인정책관(자율) 경제일자리기획관(자율), 복지기획관(자율)
	3급 (2)	경제일자리기획관(자율), 복지기획관(자율)	3급 (-)	-
관·단 (+2)	1급(1)	여성가족정책실	1급(1)	변동없음
	2·3급 (6)	대변인, 시민소통기획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비상기획관, 스마트도시정책관, 정책기획관	2·3급 (6)	대변인, 홍보기획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비상기획관, 디지털정책관, 정책기획관
	3급 (6)	재정기획관, 교통기획관, 신성장산업기획관, 보행친화기획관, 안전총괄관, 남북협력추진단(※ 한시기구)	3급 (8)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재정기획관, 교통기획관, 미래공간기획관, 안전총괄관, 주택공급기획관(※ 한시기구), 균형발전기획관(※ 한시기구) 자원회수시설추진단(※ 한시기구)
과장· 담당관 (-)	3·4급 (5)	민생사법경찰단,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 미래청년기획단, 공공개발기획단, 광화문광장추진단	3·4급 (5)	민생사법경찰단, 미래청년기획단, 신산업정책관, 공공의료추진단, 동남권추진단
합의제 (-)	정무직 (1)	자치경찰위원회	정무직 (1)	변동없음
	2·3급 (1)	감사위원회	2·3급 (1)	변동없음
	4급 (1)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4급 (1)	변동없음
임시 (△2)	3급 (3)	환경에너지기획관, 균형발전기획관, 주택공급기획관	3급 (1)	환경기획관

<현 행>



<개편 후>



- 조직 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약자와의 동행’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전담조직으로 시장 직속의 ‘약자와의동행추진단’ (3급)을 신설하고 부문별 기능을 강화함.
 - 복지정책실에 ‘안심소득추진과’ 를 신설하여 서울 안심소득 사업 추진기반을 강화하고, 고품질 임대주택 공급 등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주택정책실에 ‘주거안심지원반’ 을 신설함.
 - 저소득 청소년 교육사다리 구축을 위해 평생교육국에 ‘교육지원 정책과’ 를 신설하고, 고품격 공공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해 시민 건강국에 ‘공공의료추진단’ 을 신설함.
- 도시경쟁력 회복을 견인할 3급 조직을 신설하고 부문별 기능을 보강함.
 - 행정2부시장 직속으로 ‘미래공간기획관’ 과 ‘디자인정책관’ 을 신설하여 용산 정비창 개발 등 도시공간 혁신과 고품격 스마트 디자인도시를 구현함.
 - K-뷰티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조혁신과’ 의 업무와 뷰티산업 업무를 통합하여 ‘뷰티패션산업과’ 를 신설함.

- 녹지생태도심과 잠실 MICE 복합공간 조성사업의 추진력 강화를 위해 ‘균형발전본부’를 재편하고 ‘동남권추진단’ (3·4급)을 신설함.
- 폐기물 처리역량 확대 등 자원순환기능 강화를 위해 ‘자원회수 시설추진단’ (3급)을 신설함.
-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양육환경 개선과 문화·여가·민생 정책의 기능을 강화함.
 -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을 집중·추진하기 위해 여성가족 정책실에 ‘양육행복추진반’ (4·5급)을 신설함.
 -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등 상권활성화 지원을 위해 ‘상권활성화 담당관’을 신설함.
 - 녹색여가 시대로의 전환을 주도하기 위해 ‘푸른도시국’을 ‘푸른도시여가국’으로 재편하고, ‘공원여가사업과’와 ‘북부공원 여가센터’를 신설함.

다. 개정안의 세부검토

(1) 자율신설기구 재편 및 존속기한 연장(안 제4조·안 제14조의2, 부칙 제2조)

-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지방기구·정원규정’)에 따라 16~18개 실·국·본부(보조기관)를 설치할 수 있으며, 특례로 20%의 범위(3개)에서 조례로 추가·설치(이하 ‘자율신설기구’)할 수 있음.¹⁾
- 이에 따라 현재 시민협력국, 경제일자리기획관, 복지기획관을 자율신설기구로 운영 중이며, 존속기한은 2023년 7월 24일까지임.²⁾

< 서울시 자율신설기구 현황 >

직급	현행	변경	비고
3→2·3(1)	복지기획관 (‘21.7.25.~’23.7.24.)	좌동	보좌기관
	경제일자리기획관 (‘21.7.25.~’23.7.24.)	좌동	보좌기관
2·3급(1)	시민협력국 (‘21.7.25.~’23.7.24.)	디자인정책관	폐자신설

- 1)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시·도의 기구설치기준에 대한 특례) ① 시·도는 별표 1에 따른 시·도의 실·국·본부 설치기준 상한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해당 시·도의 조례로 실·국·본부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는 실·국·본부의 존속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③ 시·도는 제1항에 따라 실·국·본부를 추가로 설치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추가로 설치한 실·국·본부의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존속기간의 연장·삭제 또는 추가로 설치한 실·국·본부의 폐지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2)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 <제7270호, 2019.7.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율신설기구의 존속기한) 제4조의 경제일자리기획관, 복지기획관, 시민협력국의 존속기한은 2023년 7월 24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1.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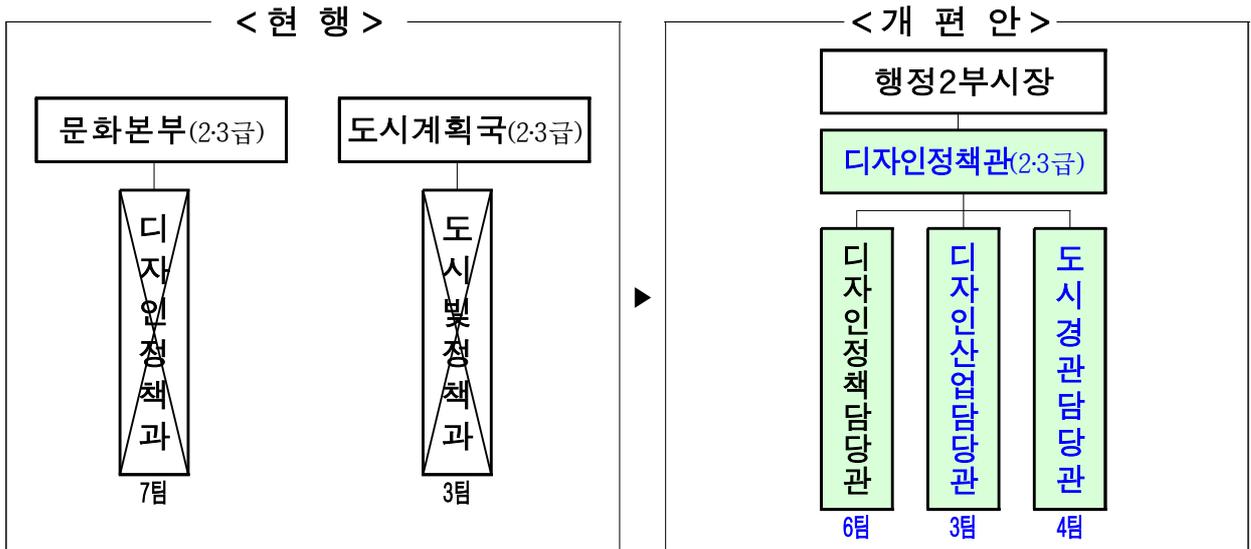
- 개정안은 경제일자리기획관과 복지기획관을 자율신설기구로 존치하고, 시민협력국은 폐지하고 디자인정책관을 신설하여 존속기한을 2024년 8월 18일까지로 연장함.
- 자율신설기구의 운영성과 평가 결과에 따르면, 경제일자리기획관(71.7점), 복지기획관(83.3점)은 존속기한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되었으나, 시민협력국(64.7점)은 기구 폐지의 저조한 평가를 받음.

< 기구운영 성과판단 기준 >

최종 평가점수	조치사항
80점 이상	존속기한 연장 후 상시기구 전환 우선 검토
70점 이상 ~ 80점 미만	존속기한 연장 또는 기구 폐지
70점 미만	기구 폐지

- 시정 분야에서 경제와 복지업무가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을 고려할 때 1급 부서장의 방대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보좌하기 위해서는 경제일자리기획관과 복지기획관의 존속기한 연장은 타당함.
- 시민협력국은 수행 중인 사업과 기능이 타 실·국으로 분산 이관되어 폐지되고, 고품격 스마트 디자인 도시 구현을 위해 행정2부시장 직속으로 디자인정책관(2·3급)이 자율신설기구로 새로 설치됨.
- 디자인정책관은 시정 전반의 디자인 관점 도입을 위해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생활디자인 확대·강화, 도시경관의 개선,

디자인산업 육성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임.



- 디자인 도시 구현이라는 정책 목표에 맞춰 디자인과 경관이 우수한 품격있고 매력적인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디자인 총괄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에서 수행해오던 디자인산업의 육성과 우수 디자이너의 발굴·지원, 산업디자인 지원 강화 업무가 주택·도로·교량·철도 등 사회간접시설의 건설·관리와 같이 이질적 업무를 수행해오던 행정2부시장 체계에서 제대로 구현할 수 있을지 의문시됨.
- 한편, 자율신설기구는 신규 행정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고 지방분권 실현 차원에서 조직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2019년 「지방기구·정원규정」 을 개정하여 새로 도입됨.

○ 하지만, 서울시는 ‘대국 대과(大局 大課)’ 조직운영 원칙에 따라 추가로 보조기관인 실·본부·국을 두지 않고 경제일자리기획관, 복지기획관처럼 사실상 1급 기관장의 보좌기구로 설치하는 등 제도 도입의 취지와 다르게 승진 적체나 법외 임시기구 해소를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 서울시를 제외한 다른 시·도에서는 자율신설기구를 기관장의 보좌기관이 아닌 실·본부·국 등의 보조기관으로 정상 활용하고 있음.

< 전국 광역자치단체의 자율신설기구 운영 현황 >

(기준: 2022.7.18. 현재)

시도	설치 가능 수	운영 현황		
		소계	명칭	존속기간
서울	3	3	복지기획관, 경제일자리기획관, 디자인정책관	'22.8.~ '24.8.(예정)
부산	3	3	신공항추진본부, 건축주택국, 관광마이스산업국	'23. 7. 9.
대구	2	1	통합신공항추진본부	'23. 6.30.
인천	3	2	재정기획관, 건강체육국	'23. 7.14.
광주	2	2	군공항이전추진본부	'23. 9.29.
			여성가족국	'23.12.31.
대전	2	1	트램도시광역본부	'23. 6.30.
울산	2	2	녹지정원국	'23.12.31.
			시민건강국	'22.12.31.
세종	1	1	문화체육관광국	'23. 7.29.
경기	4	0	-	-
강원	2	2	평화지역발전본부, 일자리국	'22.10.31.
충북	2	2	신성장산업국	'23.12.31.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	'23.12.31.
충남	2	1	청년공동체지원국	'22.12.31.
전북	2	1	새만금해양수산물국	'23. 8.31.
전남	2	1	에너지산업국	'23. 2.28.
경북	2	2	과학산업국, 아이여성행복국	'24. 1.31.
경남	2	2	여성가족아동국	'24. 1. 1.
			미래전략국	'23. 1. 3.

- 더욱이 자율신설기구의 방만한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성과평가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경제일자리기획관, 복지기획관은 독자적인 업무 영역 없이 해당 1급 부서 전체의 성과를 공유하는 등 성과평가 제도를 형해화(形骸化)하고 있음.
- 따라서 자율신설기구가 신규 행정수요와 관계없는 조직의 무분별한 확대나 공무원의 승진 적체와 법외 임시기구의 해소를 위해 악용되지 않도록 조직 운영의 일반원칙에 맞는 엄격한 조직관리가 요구됨.

(2) 시정 핵심과제 추진을 위한 한시기구 신설(안 제21조 및 부칙)

- ‘지방기구·정원규정’에 따르면,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 한시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제8조제1항)³⁾.
 - 한시기구는 조례로 3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정하고,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해 존속기한을 연장(최장 6년)할 수 있음(제8조제4항·5항)⁴⁾.
 - 시·도에서 3급 이상의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행정

3) 제8조(한시기구의 설치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한시기구 설치시에는 기존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4) 제8조(한시기구의 설치운영) ④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의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

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하고(제21조⁵⁾), 행정안전부장관은 한시기구의 적정성, 성과목표 달성도, 행정수요 전망 등을 평가하여 존속기한의 연장을 승인하고 있음.

- 서울시는 현재 한시기구로 ‘문화시설추진단’ 과 ‘남북협력추진단’ 을 운영하고 있음.
- 문화시설추진단은 2022년 5월 25일 제출된 ‘행정기구 조례 일부 개정안’ (제3201호)이 의결됨에 따라 2022년 8월 18일자로 폐지가 결정됨.

< 서울시 한시기구 운영 현황 >

부서명	존속기한	주요업무
문화시설추진단	'21.8.19. ~ '22.8.18. (폐지 결정)	· 박물관·문화시설 건립 총괄 및 조정
남북협력추진단	'21.11.1 ~ '22.10.31	· 남북교류협력사업 총괄 및 조정

- 개정안은 마지막 한시기구로 남은 남북협력추진단을 폐지하고⁶⁾, 존속기한을 1년(2022.8.19.2023.8.18.)으로 하여 주택공급기획관, 균형발전기획관, 자원회수시설추진단을 신설함.

5) 제21조(한시기구 등 설치시 직급책정 협의) 한시기구와 소속기관을 설치할 경우 소속 공무원 (장과 보조·보좌기관을 포함한다)의 직급이 시·도에서는 3급 이상인 경우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하고, 시·군·구에서는 4급 이상인 경우에는 미리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6) 남북협력추진단은 남북관계 경색에 따라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추진이 어려워진 여건을 반영하고 북한이탈주민, 이산가족 지원 등 실행가능성이 높은 사업 위주의 추진을 위해 행정국 ‘남북협력과’로 축소·폐지됨.

- 주택공급기획관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신속한 주택공급이라는 시정목표 달성을 위해 주택공급 관련 부서에 행정역량을 집중하고자 법외 임시기구에서 한시기구로 전환됨.
- 균형발전기획관은 권역별 균형발전계획의 수립·실행과 도심공간 혁신에 행정역량을 집중해 추진할 수 있도록 법외 임시기구에서 한시기구로 편입됨.
- 자원회수시설추진단은 주민 혐오시설로 분류되는 폐기물 소각장 건립을 둘러싼 민원과 갈등을 조정·해결하여 광역자원회수시설의 안정적인 건립과 추진을 목적으로 설치됨.
- 남북협력추진단은 그간 3급 기구에 적합한 조직규모와 업무량을 갖추지 못한 채 운영되었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와 남북관계 경색으로 당초 설치 목적인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추진이 어려운 여건을 고려해 폐지하게 됨.
- 신설되는 주택공급기획관, 균형발전기획관, 자원회수시설추진단은 민선 8기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목적에서 신설되는 것으로, 그 설치 목적은 공감할 수 있음.
- 다만 1년이라는 존속기한 내에 담당 사업의 완료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향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기구 운영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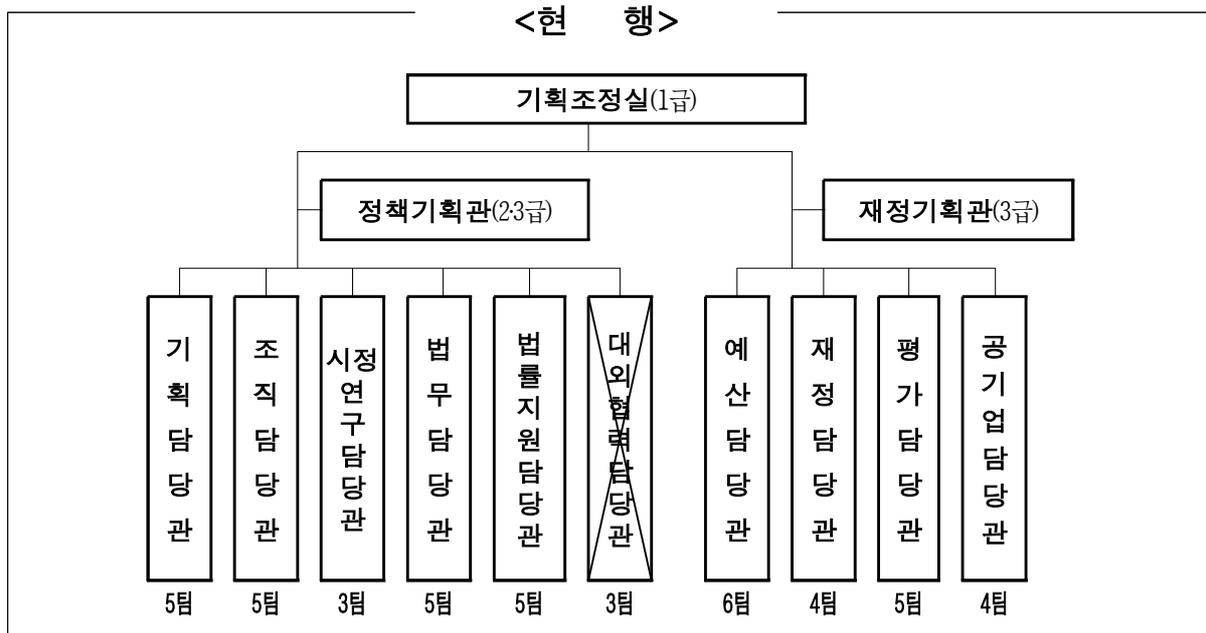
- 또한, 법외 임시기구로 운영하던 주택공급기획관, 균형발전기획관을 정규기구화한 점은 위법사항을 해소하는 바람직한 입법 조치라 판단되나, 조직개편 이후에도 환경에너지기획관이 여전히 임시기구로 운영되는 점은 조속한 시정조치가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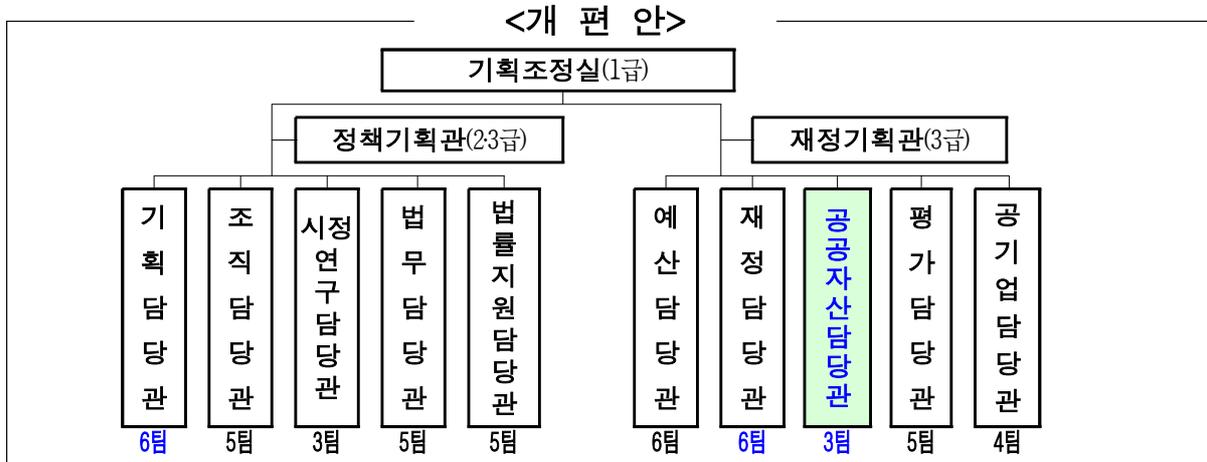
< 서울시 법외 임시기구 현황 >

직급	현행	변경	비고
3급 (3→1개)	환경에너지기획관	환경기획관	
	주택공급기획관	-	한시기구로 전환
	균형발전기획관	-	한시기구로 전환

(3) 기획조정실의 재편(안 제5조)

- 기획조정실은 ‘대외협력담당관’이 폐지되고, ‘공공자산담당관’이 신설되어 1실 2관 10담당관으로 재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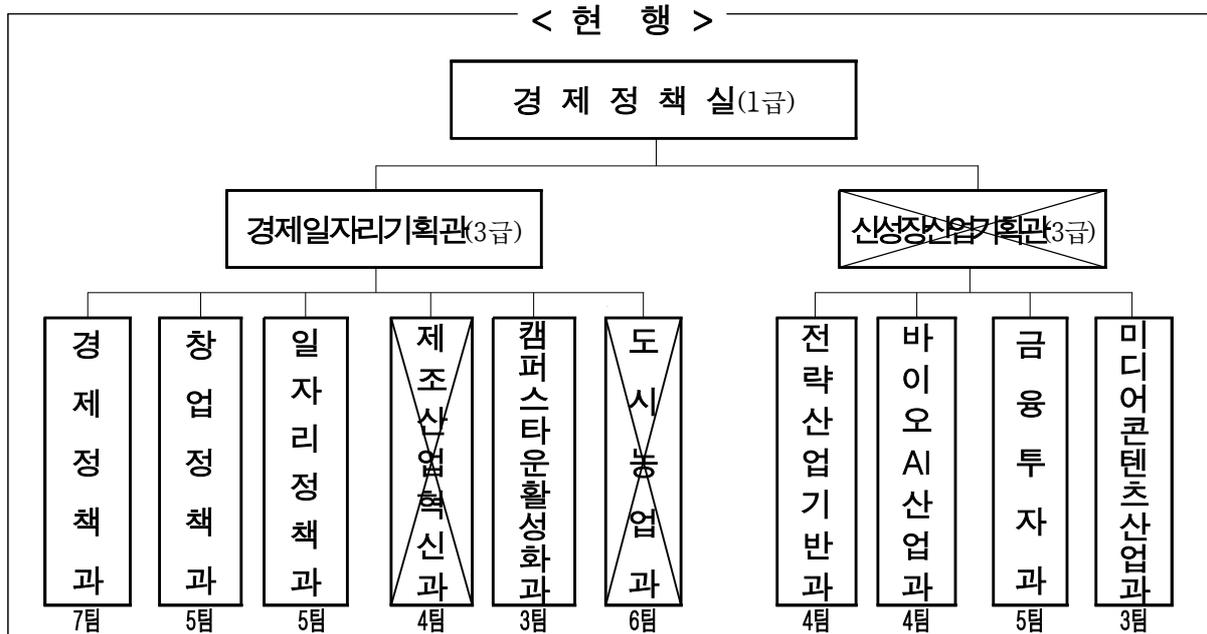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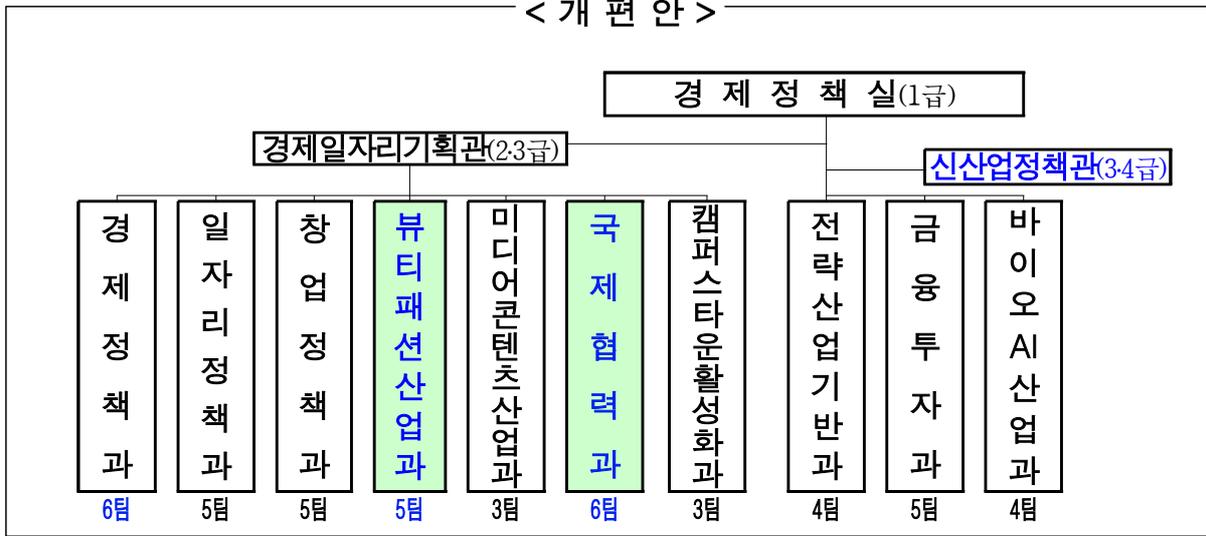
- ‘공공자산담당관’은 도시계획국의 공공시설 기부채납 통합관리 업무와 공공개발기획단의 공공토지활용, 위탁개발 등 공공자산 관련 기능을 이관받아 시유재산에 대한 총괄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함.
- 공공자산과 공공토지의 활용체계를 고도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성은 인정되나, 재무국에서 행정재산과 시유재산에 대한 취득과 관리처분 등 공유재산의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부서 간 상호 역할과 기능에 대한 재정립이 요구됨.
- ‘대외협력담당관’의 폐지는 대외협력, 시민협력, 남북협력 등 각 분야별 협력 기능을 행정국으로 일원화하여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임.
- 한편 조직개편안에 따라 시민숙의예산 업무가 시민협력국에서 이관되어 재정담당관에서 수행될 예정이나, 개정안에는 미반영됨.

- 시민숙의예산과 4개팀(숙의예산총괄팀, 참여운영팀, 참여지원팀, 시민협력팀)은 재정담당관의 2개팀(시민참여예산정책팀, 시민참여예산지원팀)으로 축소·재편하여 운영될 예정임.

(4) 경제정책실의 재편(안 제6조)

- 경제정책실은 ‘뷰티패션산업과’ (제조업산업혁신과 폐지·재편)와 ‘국제협력과’가 신설되고, ‘도시농업과’가 폐지되어 1실 2관 10과로 재편됨.
- 경제정책실장을 보좌하는 3급 기획관의 관할 4급 부서가 변경됨에 따라 업무량 등을 고려해 경제일자리기획관(3급→2·3급)과 신성장산업기획관(3급→3·4급)의 직급을 조정함.





- ‘뷰티패션산업과’ 는 코로나로 침체된 뷰티·패션산업계의 활성화와 판로 확장 등을 위한 총괄적 지원을 위한 것으로 기존의 ‘제조산업혁신과’ 를 재편·신설함.
- 그러나 부서 전체의 업무와 기능을 균형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채 시장의 역점사업인 뷰티산업을 강조하고 있어 적합한 부서명칭으로 보기는 어려움.
 - 조직개편 이후에도 도시형제조업에 대한 육성과 지원 등이 주력 업무로 남아 있게 되어 부서 업무 전체를 아우르는 명칭으로 볼 수 없음.
- ‘국제협력과’ 의 신설은 시민소통기획관의 국제교류 협력, 국제기구·회의업무의 이관에 따른 것이나, 우수정책 해외진출 사업의 대부분은 경제 분야가 아닌 다른 정책 사업들로 추진되고 있어 경제정책실의 담당 업무로 적정한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2006년부터 서울시 우수정책 해외진출은 총 38개국·65개 해외도시에서 98건·8,119억원 규모로 추진되었으며, 교통·도시철도·전자정부·도시계획·상수도 분야업무가 대부분임(89건·91%).

< 우수정책 해외진출 분야별 실적 >

계	교통	도시철도	전자정부	도시계획	상수도	환경	소방	주택
98건	36건	22건	17건	9건	5건	5건	3건	1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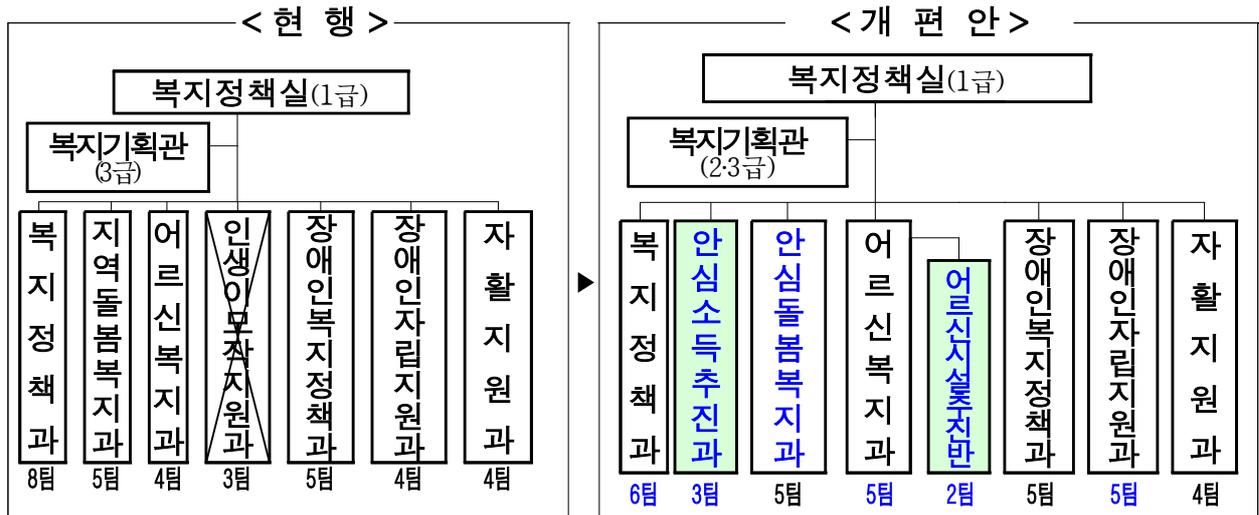
- 또한, 도시농업은 텃밭 조성과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청년 취·창업, 공영도매시장 관리 등이 통합적으로 반영되어야 함에도 ‘도시농업과’를 폐지하고 분리 이관하는 것은 도시농업 분야의 지속적 연계 지원과 가시적인 성과 창출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음.
- 현재 ‘도시농업과’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도시텃밭 조성(푸른도시여가국)’, ‘지역상생교류(행정국)’, ‘농수산물유통(노동·공정·상생정책관)’ 등 기능별로 분리되어 타 부서로 이관됨.
- 특히, 농수산물 유통 분야는 농수산물의 유통과 가격 형성이 서민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하면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보다는 경제정책실이 계속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한편, 3급 보좌기구의 관할 부서가 변경되면서 업무량과 중요성 등에 따라 경제일자리기획관(3급)은 2·3급으로 직급을 상향하고, 신성장산업기획관(3급)은 3·4급으로 직급을 하향하여, 신산업정책관으로 명칭 변경됨.

- 조직 개편안에 따라 경제일자리기획관의 소관 4급 부서는 6개에서 7개로 확대되고, 신성장산업기획관의 소관 4급 부서는 4개에서 3개로 축소됨.

- 경제·일자리 분야에 대한 행정 수요와 정책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경제일자리기획관의 직급 상향은 타당하지만, 신성장산업기획관은 직급의 하향 조정으로 4급 부서를 직접적으로 관할할 수 없게 되므로 기관장을 보좌하는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음.

(5) 복지정책실의 기능 확대·개편(안 제7조)

- 복지정책실은 ‘인생이모작지원과’가 폐지되고, ‘안심소득추진과’와 ‘어르신시설추진반’이 신설되어 1실 1관 7과 1반으로 확대·개편됨.



- ‘안심소득추진과’는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고 소득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추진되는 서울 안심소득⁷⁾ 사업을

7)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구소득의 일정비율을 채워줌으로써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전담하기 위해 신설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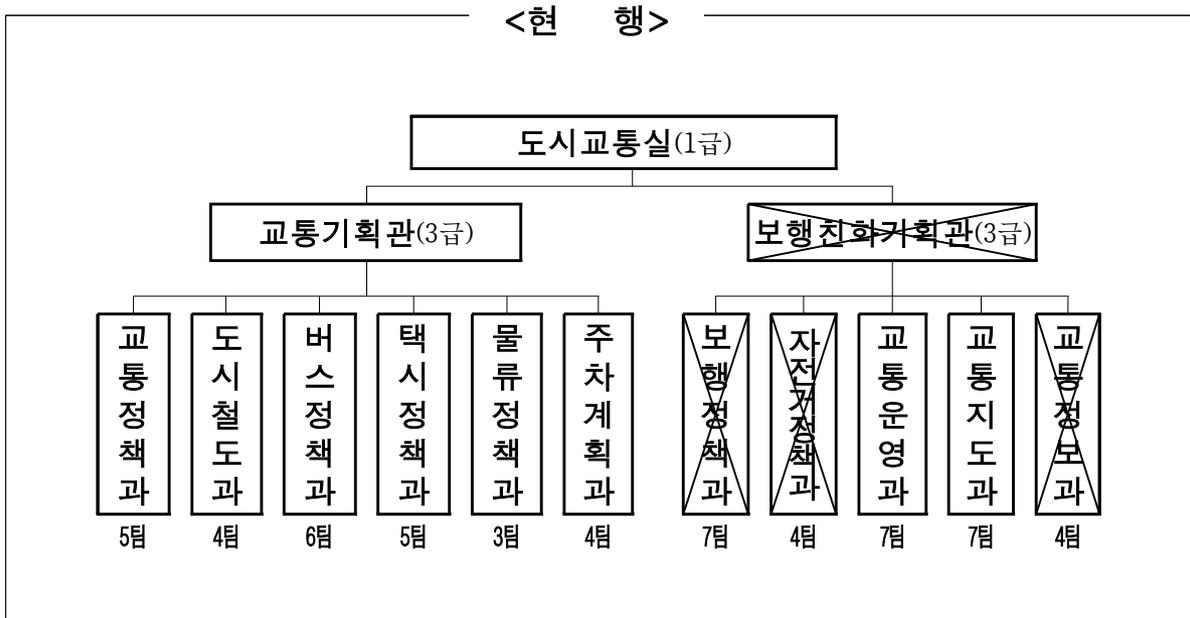
- 서울시는 중위소득의 85%(2022년 1인가구 기준 약 165만 3,100원)와 재산 (3억 2천 6백만원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800가구를 선정해 3년 동안 안심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재분배 효과 등을 분석·평가할 예정임.
- 서울 안심소득사업은 시범사업(3년) 평가 결과에 따라 많은 재원이 투입되는 본사업의 추진 여부가 결정되므로 안정적이고 일관된 추진을 위해 전담부서가 필요함.
- 또한, 어르신 복지시설 확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어르신시설 추진반’ (4·5급)의 신설 취지는 타당하나, 확대 추세에 있는 어르신 복지시설에 비해 조직 규모가 2개팀에 불과해 형식적인 추진에 그칠 우려가 있음.
- 한편, 50대 이상 세대의 교육, 일자리, 여가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해온 ‘인생이모작과’는 중장년층 업무와 어르신 업무로 나뉘어 평생교육국(평생교육지원과)과 ‘어르신복지과’로 각각 이관됨.
- 베이비부머 세대 등 중장년층은 노후 준비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일자리에 대한 수요가 높은 편이며, 취업 희망자의 경력과 특성을 고려한 일자리 연계와 취업 교육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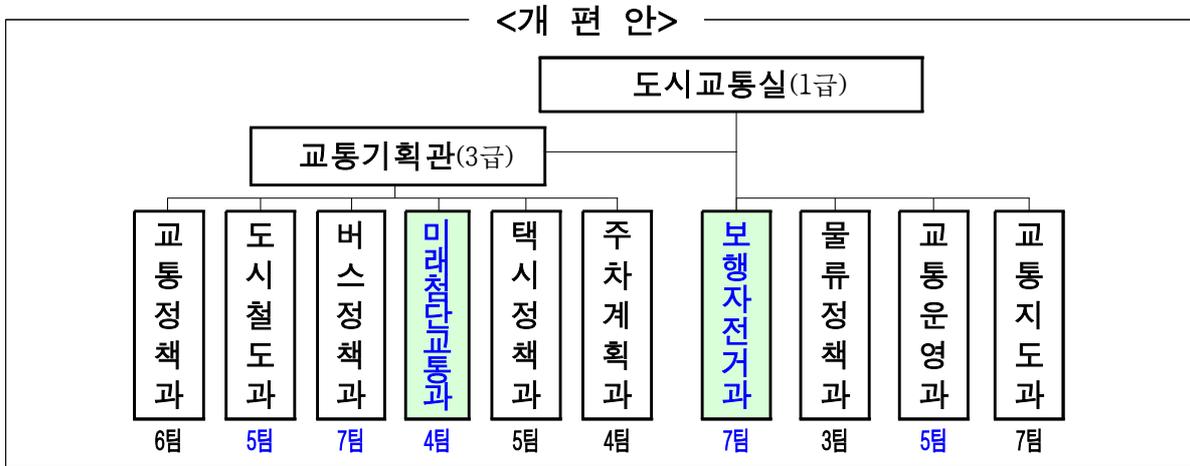
- 이러한 상황에서 중장년층에 특화된 취업과 일자리 업무와 50플러스재단의 관리·감독업무가 평생교육국으로 이관될 경우 중장년 지원 사업들의 혼선이 우려됨.

-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 11건이 모두 중장년 일자리사업 이관과 50플러스재단 통·폐합에 대한 반대 의견임.

(6) 도시교통실의 기능 축소·개편(안 제8조)

- 도시교통실은 ‘미래첨단교통과’와 ‘보행자전거과’를 신설하고, 기관장의 보좌기구인 보행친화기획관(3급)을 폐지하면서 1실 1관 10과로 축소·개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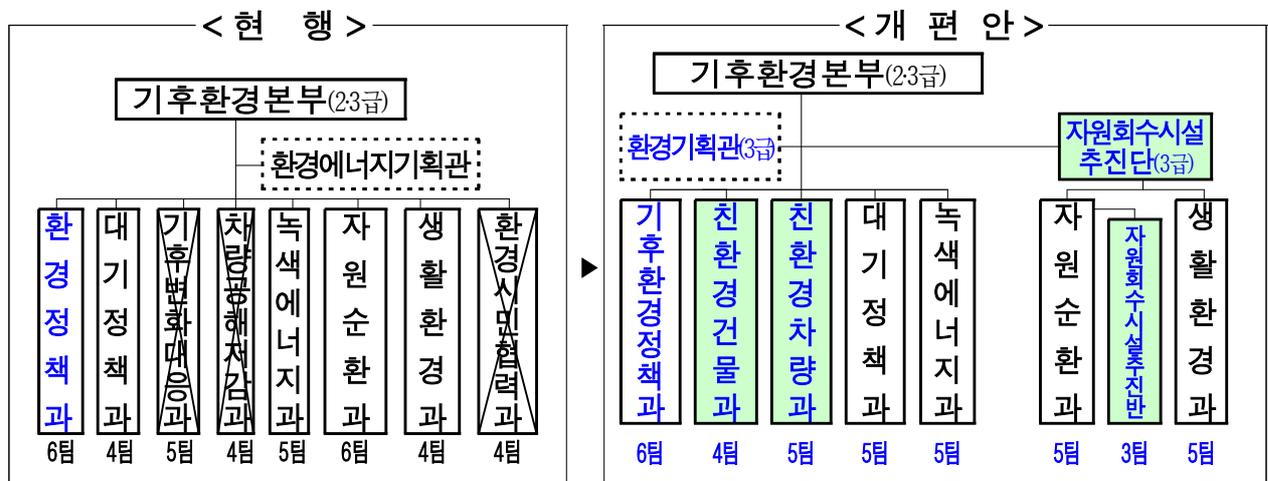


- ‘미래첨단교통과’는 현행 ‘교통정보과’의 업무에 자율주행, 도심 항공 모빌리티(UAM) 등 ‘미래첨단교통 사무’를 추가해 재편·신설함.
- 철도계획 업무의 일원화를 위해 철도 노선별 기본계획 수립과 민자 철도 협상업무(도시기반시설본부)가 도시교통실로 이관됨에 따라 이를 ‘교통정책과’ (철도사업 총사업비 관리, 기본계획 수립)와 ‘도시철도과’ (민간투자사업 운영 등 협상)에서 각각 수행함.
- ‘보행자전거과’의 신설은 보행자 중심의 교통정책과 자전거 등의 전략사업이 안정화됨에 따라 ‘보행정책과’와 ‘자전거정책과’를 통합·재편함.
- 개정안은 자율주행, 도심 항공 모빌리티 등 첨단 교통수단과 미래 교통기술의 운영 업무가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미래 교통수단의 인프라 확충을 위한 조직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다만, 자전거 이용과 개인형이동장치(PM) 이용률 증가와 함께 각종 사고도 증가하는 상황에서 보행 및 자전거 관련 팀을 대폭 축소할 경우(2과 11팀 → 1과 7팀) 효과적인 정책 대응이 어려울 수 있음.

(7) 기후환경본부의 확대·개편(안 제9조)

- 기후환경본부는 ‘기후변화대응과’, ‘차량공해저감과’, ‘환경시민협력과’ 를 폐지하고, ‘친환경건물과’, ‘친환경차량과’, ‘자원회수시설추진반’ 을 신설하여 1본부 1관 1단 7과 1반으로 확대·개편됨.



- 자원회수시설 건립·운영의 추진을 위해 3급 한시기구인 ‘자원회수시설추진단’ 을 신설하고 계선조직으로 ‘자원순환과’, ‘자원회수시설추진반’ (4·5급), ‘생활환경과’ 를 배치함.
- 2026년부터 수도권매립지에 종량제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될 예정이므로⁸⁾ 자원회수시설 신규 건립이 시급하지만, 혐오시설인 폐기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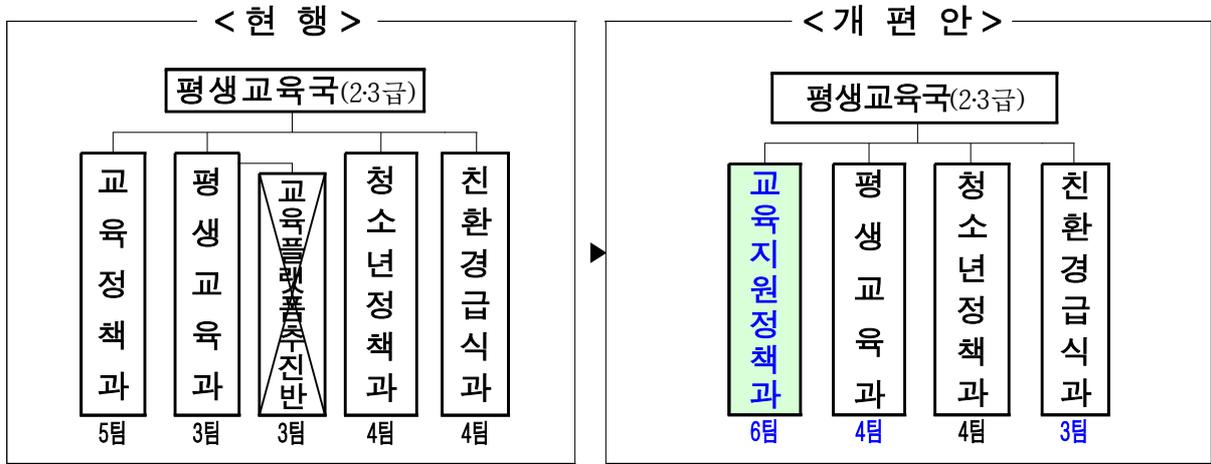
소각장의 건립을 두고 지역 주민과의 갈등과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전담기구가 필요함.

- 다만, 자원회수시설추진반(4·5급)에서 광역 자원회수시설의 신규 건립, 노후화된 자원회수시설(4개소, 미포·양천·강남·노원) 리모델링까지 담당하는 것이 적절한 조직 편성과 업무 분장인지 검토가 필요함.
- 또한, 건물 에너지효율화와 친환경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 사무의 수행을 위해 ‘기후변화대응과’와 ‘차량공해저감과’를 ‘친환경 건물과’와 ‘친환경차량과’로 각각 변경·재편하고,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추진할 예정임.
- 이 밖에 기후환경본부의 정책목표를 부서명칭에 반영하기 위해 환경에너지기획관을 ‘환경기획관’으로, ‘환경정책과’를 ‘기후 환경정책과’로 각각 변경하고, ‘환경시민협력과’를 폐지하여 관련 업무를 ‘기후환경정책과’와 ‘친환경차량과’로 이관함.

(8) 평생교육국의 축소·개편(안 제12조)

- 평생교육국은 ‘교육플랫폼추진반’ (4·5급, 서울런 담당)이 ‘교육 정책지원과’로 통합·재편되면서 1국 4과로 축소·개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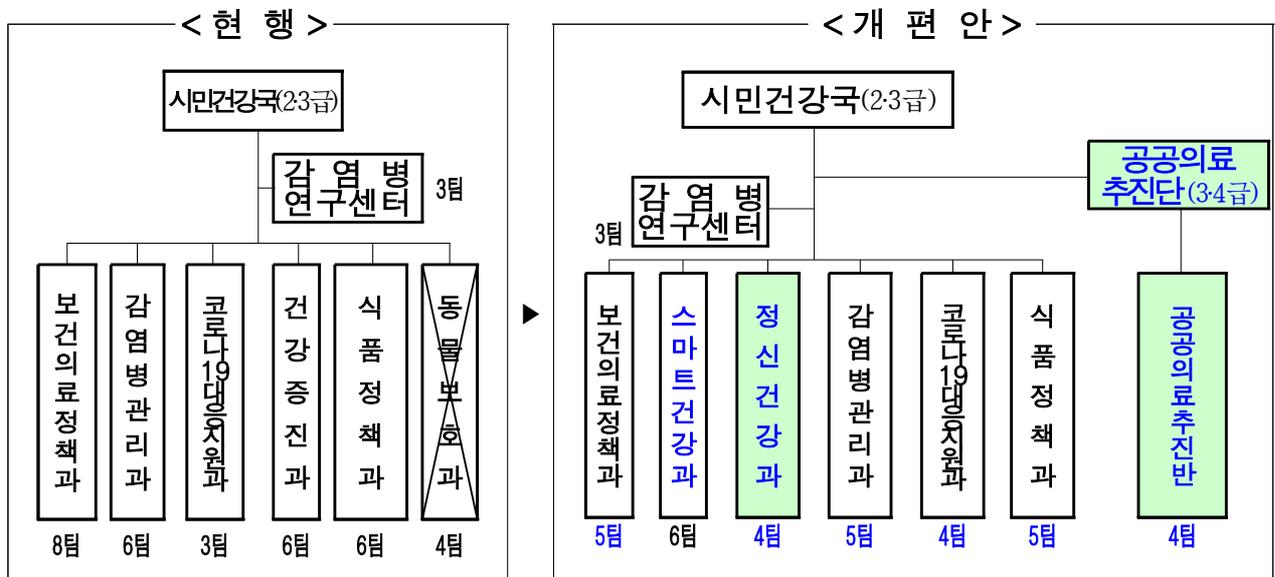
8)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생활폐기물은 바로 매립해서는 안 되며, 소각 또는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비가연성 협잡물·잔재물만 매립하여야 함.”(수도권 지역 시행일 2026.1.1.)



- 복지정책실(인생이모작지원과)에서 중장년층의 경제활동 및 사회참여, 교육·여가 지원에 관한 사항이 이관되면서 50+재단, 50+센터·캠퍼스 지원, 중장년 사회참여·일자리지원 등의 사업을 ‘평생교육과’에서 수행하게 됨(평생교육복지팀 신설).
- 하지만, 평생교육국은 일자리 사업의 수행 경험이 없어 업무 이관 후에도 중장년층 일자리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출연기관인 50+재단과 긴밀한 협업관계를 구축해야 함.
 - 평생교육국은 주로 취약계층과 청소년,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학력보완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음.
- 이 밖에 2021년 8월에 시작된 서울런이 회원수가 14,400여명(’22.6.13.기준)에 이르고 학습진도율도 향상되는(’21년말 43.1%→’22년 6월 48.1%) 등 사업이 안정화됨에 따라 ‘교육플랫폼추진반’(4·5급)과 ‘교육정책과’를 ‘교육지원정책과’로 통합·재편함.

(9) 시민건강국의 확대·개편(안 제12조의2)

- 시민건강국은 ‘동물보호과’가 폐지되고, ‘공공의료추진단’ (3·4급), ‘공공의료추진반’, ‘정신건강과’가 신설되면서 1국 1단 6과 1센터 1반으로 확대·개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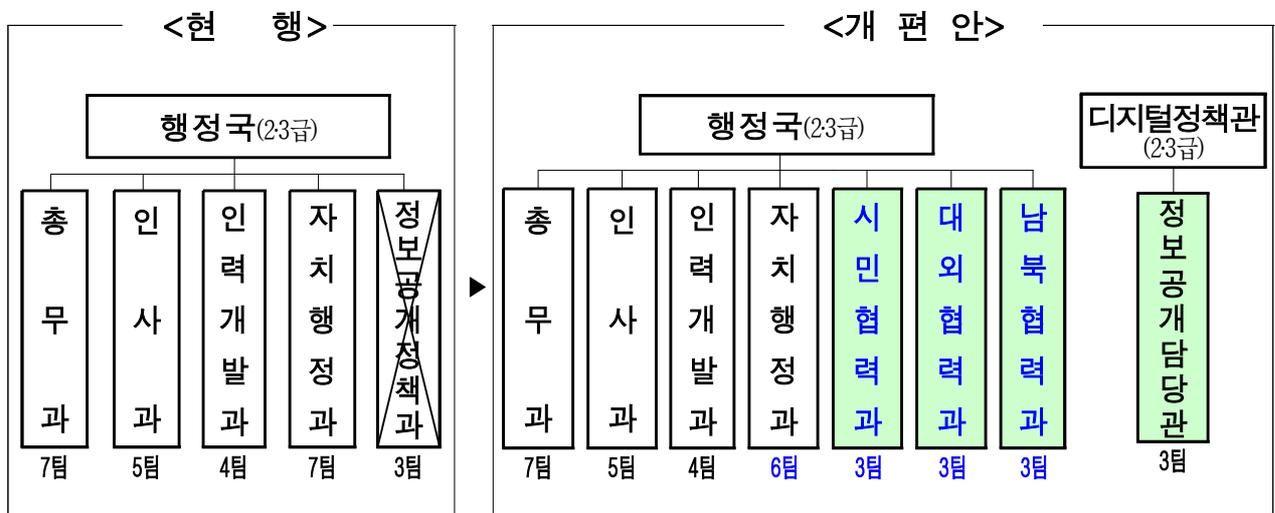


- 공공의료추진단(3·4급)은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과 공공의료서비스 강화의 집중·추진을 위해 신설되고, 공공의료추진반이 계선조직으로 업무를 수행함.
- 또한, ‘정신건강과’는 정신건강·정신보건 계획 수립·지원, 어르신 건강 및 치매관리 등을 담당해 코로나19 이후 우울증 등으로 취약해진 시민들의 정신건강을 보호·증진하게 됨.

- 한편 동물보호 및 수의공중 보건 사무가 푸른도시여가국 소관으로 변경되면서 ‘동물보호과’도 이관되나, 공원 내 반려견 놀이터 조성처럼 업무 유관성이 인정되는 분야도 있지만, 수의공중보건 기능은 푸른도시여가국에서 담당하기에는 부적합함.
- 수의공중보건 업무는 가축전염병(구제역, AI 등) 관리, 가축방역 역학 조사 및 살처분 보상, 수의사법·가축전염병예방법 제도개선 등이 포함되어 있어 녹색여가문화시대로의 전환을 위한 부서와는 업무의 성질이 맞지 않음.

(10) 행정국의 확대·개편(안 제13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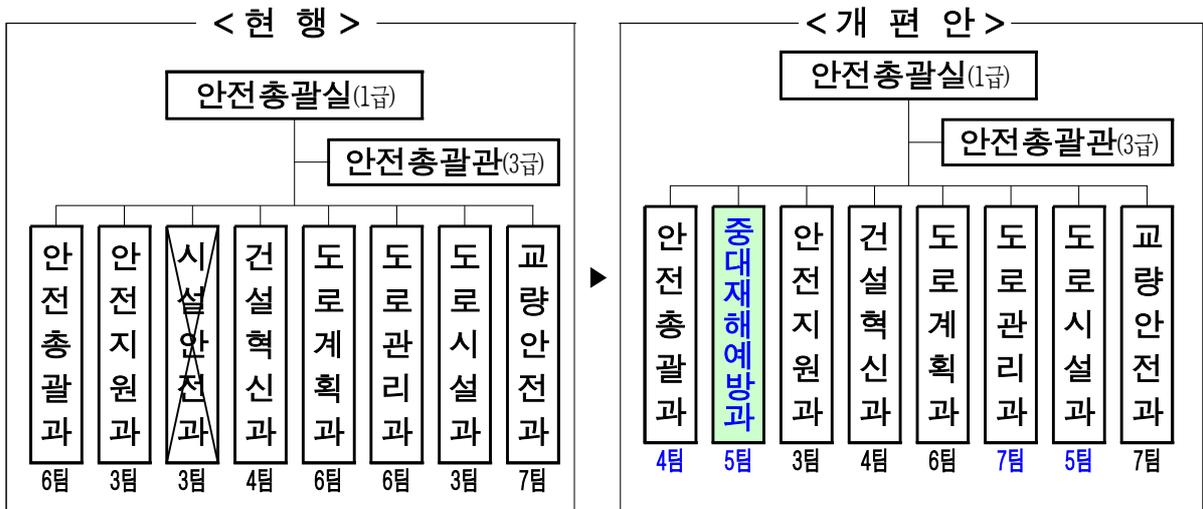
- 행정국은 그간 분야별로 흩어져 있던 협력 기능을 일원화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자 ‘시민협력과’, ‘대외협력과’, ‘남북협력과’를 각각 신설하고, ‘정보공개정책과’를 폐지하면서 1국 7과로 확대 개편함.



- 하지만, 협력 기능이라는 공통점에 기반하더라도 분야가 다르면 업무대상과 사업추진 방식에서 큰 차이를 보이므로 조직개편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음.
- 시민협력 분야의 경우 거버넌스의 활성화와 시민협력체계의 안정화를 이관 사유로 제시하고 있으나, 자율신설기구로 시민협력국이 신설된지 1년 만에 폐기되는 것은 조직의 안정적 운영 차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음.
 - 시민협력국은 2021년 6월 조직개편 당시 서울민주주의위원회와 서울혁신기획관이 폐지되고 시민참여와 민간협력 활성화 사업의 총괄 조직으로 신설됨.
- ‘정보공개정책과’의 행정정보 공개·기록물 사무는 신설되는 디지털정책관(2·3급)의 소관으로 이관되는 바, 행정포털 등 내부 행정정보시스템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효과가 있음.

(11) 안전총괄실의 재편(안 제15조)

- 안전총괄실은 ‘시설안전과’가 폐지되고 ‘중대재해예방과’가 신설되면서 1실 1관 8과로 재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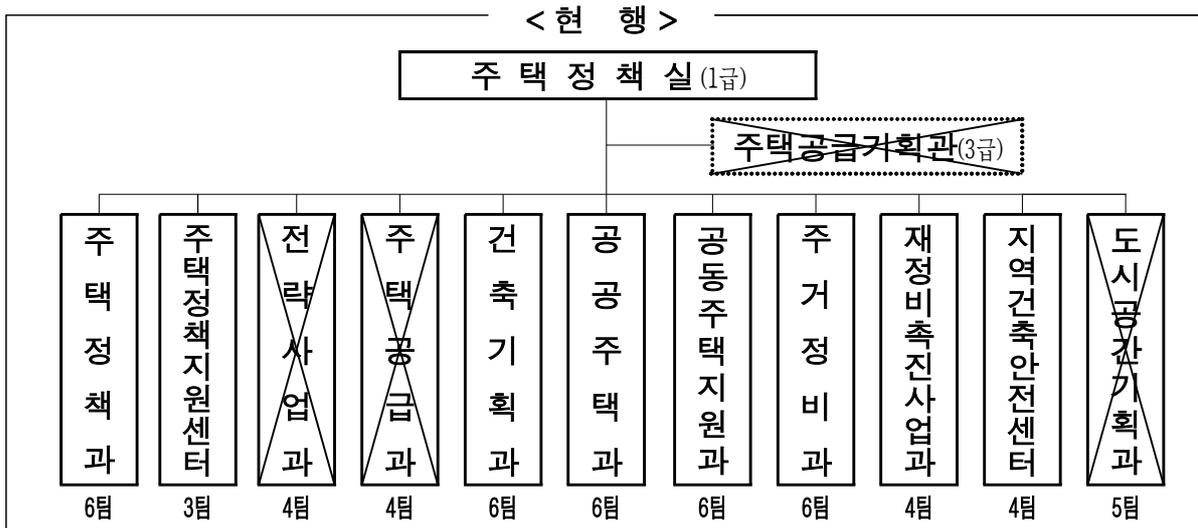
-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2022.1.27.)에 따라 중대산업재해(‘노동·공정·상생정책관’)와 중대시민재해(‘안전총괄실’)로 분산된 담당조직을 일원화하여 공공 이용시설 관련 재해를 효율적으로 예방·대응하고자 ‘중대재해예방과’가 신설됨.
- 한편, 안전총괄실 사무에 “보도관리·보도환경 개선”을 신설해 그 동안 이원화된 도로 관리 기능(보도 : 도시교통실, 차도 : 안전총괄실)을 일원화함.
 - 도로 기반침하 등의 복합재난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도시교통실’의 보도관리 기능을 ‘도로관리과’로 이관하고, 도로 시설 관련 업무는 ‘도로시설과’로 재편함.
- 조직개편을 통해 안전총괄실에서 차도와 보도를 통합·관리하게 되더라도 사람중심의 보행친화적인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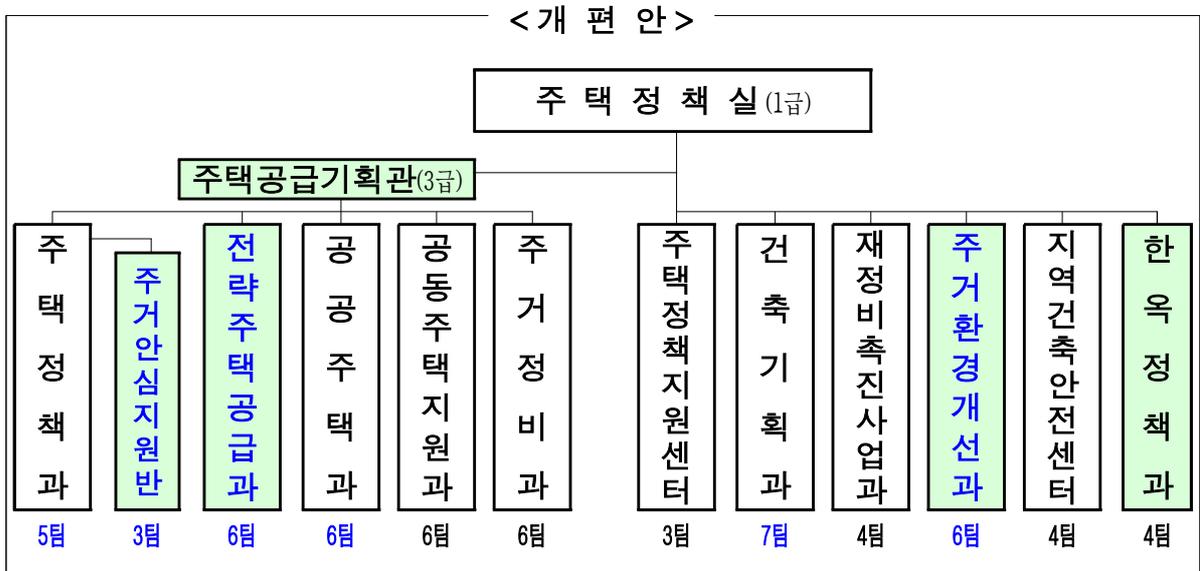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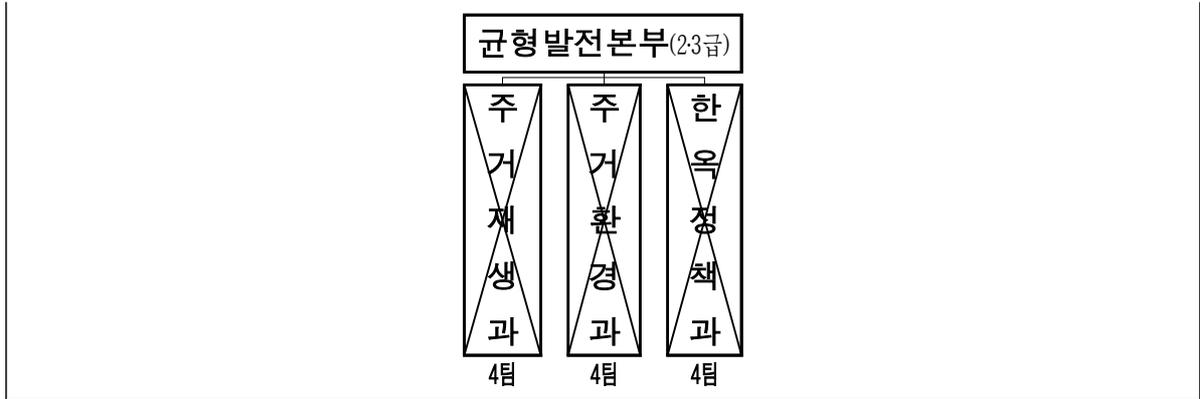
교통실과 긴밀한 업무 공조가 필요함.

- 그 밖에 시행규칙으로 관리해 온 “자동차 전용도로 관리(도로시설과)”, “한강교량 등 유지·관리(교량안전과)” 를 조례로 상향해 시민의 안전보호와 위험 방지에 대한 안전총괄실의 책임성을 제고함.

(12) 주택정책실의 확대·개편(안 제16조)

- 주택정책실은 ‘주택공급기획관(3급)’ 을 정규기구로 전환하고, ‘주거안심지원반’, ‘전략주택공급과’, ‘주거환경개선과’, ‘한옥정책과’ 를 신설하며, ‘전략사업과’, ‘주택공급과’, ‘도시공간기획과’ 를 폐지하여 1실 1관(한시) 9과 2센터 1반으로 확대·개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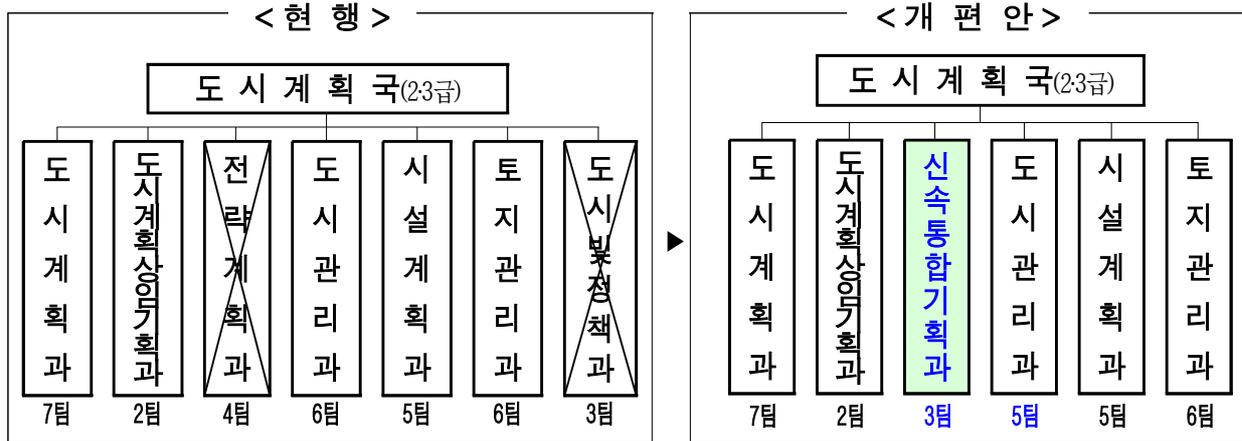


- 주택공급기획관(3급)은 그동안 범외 임시기구로 운영되었으나,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1년 존속기한의 한시기구로 전환하고, 주택공급을 담당하는 5개 과와 1개 반(4·5급)을 계선조직으로 둬.
- 또한, 주거재생 기능의 일원화를 위해 균형발전본부에서 ‘주거재생과’, ‘주거환경과’, ‘한옥정책과’를 이관받아, ‘주거환경개선과(주거 재생정책, 주거환경정비)’와 ‘한옥정책과(한옥 등 건축자산 보전·진행)’로 재편함.

- 이와 함께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모아주택, 상생주택, 청년주택) 등 주택 전략 분야와 주택공급 분야 간의 연계와 주택사업의 집중 추진을 위해 ‘전략사업과’ 와 ‘주택공급과’ 를 ‘전략주택공급과’ 로 통합함.
- 한편, ‘도시공간기획과’ 는 공공건축 및 공간환경사업에 대한 소관 부서가 변경되면서 미래공간기획관으로 이관됨.
-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신속한 주택공급이라는 시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주택공급 관련 부서에 행정역량을 집중하는 것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음.
- 하지만, 업무량과 행정수요에 대한 고려없이 시장 역점사업이라는 이유로 인력과 조직부터 확충하는 조직 개편은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비용을 발생시키므로 주의가 요구됨.
 - ‘전략사업과’ 는 지난 조직개편에서 업무 수요가 불명확하다는 점이 지적되었으며, 결국 신설된 지 1년 만에 ‘전략주택공급과’ 로 통합·재편됨.
 - ‘도시공간기획과’ 도 행정2부시장 직속기구에서 주택정책실 소속으로 편제가 변경되었다가 1년 만에 행정2부시장 직속의 미래공간기획단으로 이관됨.

(13) 도시계획국의 축소·개편(안 제17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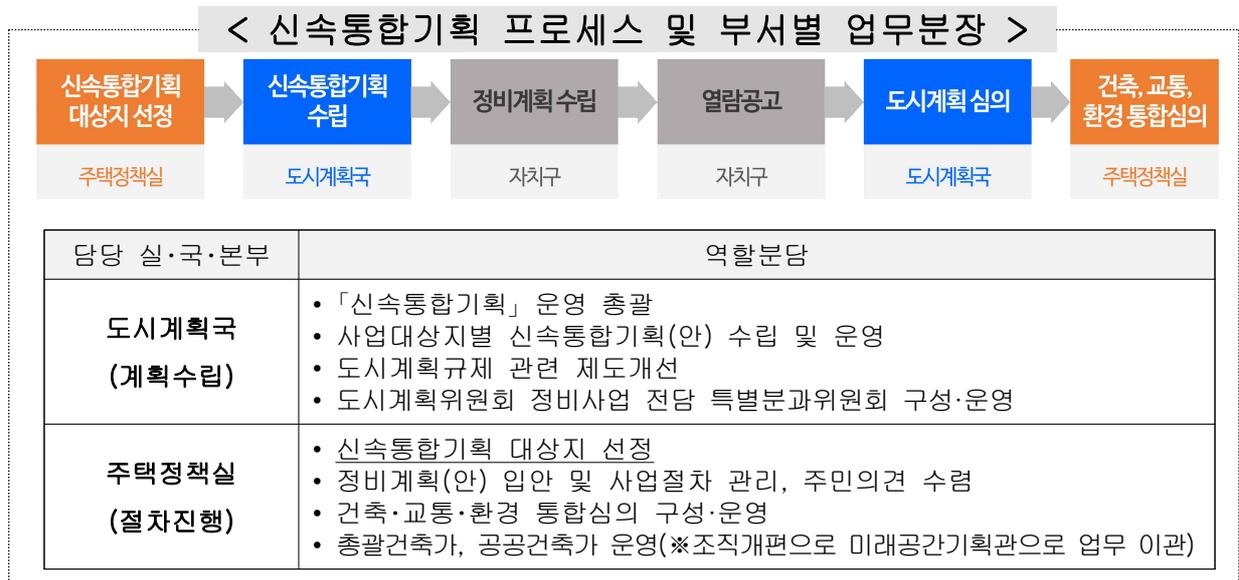
- 도시계획국은 ‘전략계획과’, ‘도시빛정책과’가 폐지되고, ‘신속통합기획과’가 신설되어 1국 7과에서 1국 6과로 축소·개편됨.



- 도시빛정책에 대한 사무와 도시경관계획의 수립·조정 및 사업시행(도시계획과 도시경관팀) 사무가 행정2부시장 직속 디자인정책관으로 통합 이관됨에 따라 ‘도시빛정책과’는 폐지됨.
- 정비사업 단계에서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신속통합기획의 전담부서인 ‘신속통합기획과’(현 도시계획과 2개팀)를 신설하여 시장의 역점사업에 행정역량을 집중하고, 대상지 증가에 맞춰⁹⁾ 신속하고 명확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조직 개편은 타당함.

9) 현재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대상지는 52개소(완료 후 절차 진행 10개소, 진행 42개소)이며, 올해 9월(예상) 공모를 통해 재개발 대상지 25개소(자치구별 1개소)를 추가 선정할 계획*임.
* 재건축 대상지는 상시 모집으로 정확한 개소를 예측하기 어려움.

- 다만, ‘신속통합기획과’는 「지방기구·정원규정」에서 정한 ‘과’ 단위의 기본 업무량인 4팀에 미달하고 있어¹⁰⁾ 법적 기준에 맞는 적절한 업무영역을 확보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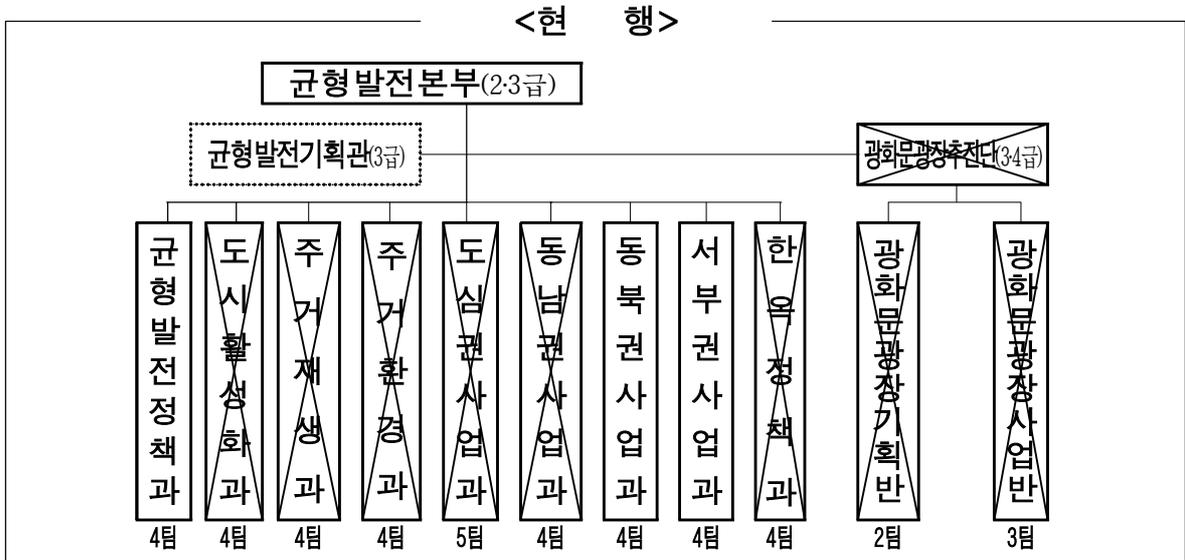


(14) 균형발전본부의 축소·개편(안 제18조)

- 균형발전본부는 주거재생 관련 3개 부서가 주택정책실로 이관되고, ‘광화문광장추진단(3·4급)’ 과 ‘광화문광장사업반’ 이 폐지되며, ‘균형발전기획관(3급)’, ‘동남권추진단(3·4급)’ 등이 신설되면서 1본부 1관 1단 6과 1반으로 축소·개편됨.

10)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기구설치의 일반요건)

⑤ 과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특별한 경우 외에는 12명[시·도는 5급 4명 이상, 시·군·구는 6급 4명 이상 포함] 이상의 정원이 필요한 업무량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한다.



- 권역별 균형발전계획의 수립·실행에 행정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법외 임시기구인 균형발전기획관을 정규기구(한시기구)로 전환하고, 6개 부서를 계선조직으로 둬.
- 주택정책실로 주거재생 기능이 일원화됨에 따라 ‘주거재생과’ (주거재생정책), ‘주거환경과’ (주거환경정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역사문화도시 관리), ‘한옥정책과’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진흥)는 폐지됨.

- 도심공간 혁신을 위한 실행체계를 강화하고자 ‘도시활성화과’와 ‘도심권사업과’를 ‘도심재창조과(도심활성화)’와 ‘도시정비과(도심정비형 재개발)’로 재편함.

< 도시활성화과 및 도심권사업과 개편 전·후 비교 >

개편 전		개편 후	
도시활성화과	주요업무	도심재창조과	주요업무
도시활성화 정책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도심재창조 정책팀	역사도심기본계획 등 주요 사업 계획 수립
도시개발팀	도시개발사업 (→ 도시정비과로 이관)	도심재창조 사업팀	도심(창덕궁, 정동 일대) 재생 활성화사업 (← 도심권사업과)
도시활성화 사업팀	시장정비사업 (→ 도시정비과로 이관)	녹지도심 계획팀	세운지구 정비 및 관리 (← 도심권사업과)
개발지관리팀	토지구획정리사업 (→ 도시정비과로 이관)	녹지도심 조성팀	세운상가군 일대 도시재생사업 (← 도심권사업과)
도심권사업과	주요업무	도시정비과	주요업무
도심정책팀	역사도심기본계획 수립 창덕궁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 및 운영 등	도시정비정책팀	도심 외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등
도심계획팀	정동일대 재생활성화 사업 (→ 도심재창조과로 이관)	도시개발팀	도시개발사업 (← 도시활성화과)
다시세운사업팀	세운지구 정비 및 관리 (→ 도심재창조과로 이관)	시장정비팀	시장정비사업 (← 도시활성화과)
다시세운관리팀	세운상가군 일대 도시재 생사업 (→ 도심재창조과로 이관)	개발지관리팀	토지구획정리사업 (← 도시활성화과)
공공사업팀	효창공원, 서울역 일대 도 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운영	공공개발팀	효창공원, 서울역 일대 도 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운영

- ‘도심권사업과’는 지난 조직개편(2021.6.)에서 ‘공공재생과’와 ‘역사도심재생과’의 축소·통합으로 신설되었으나, 다시 ‘도심재창조과’와 ‘도시정비과’에 분리·이관함에 따라 잦은 부서 변경으로 사업추진에 혼란을 일으키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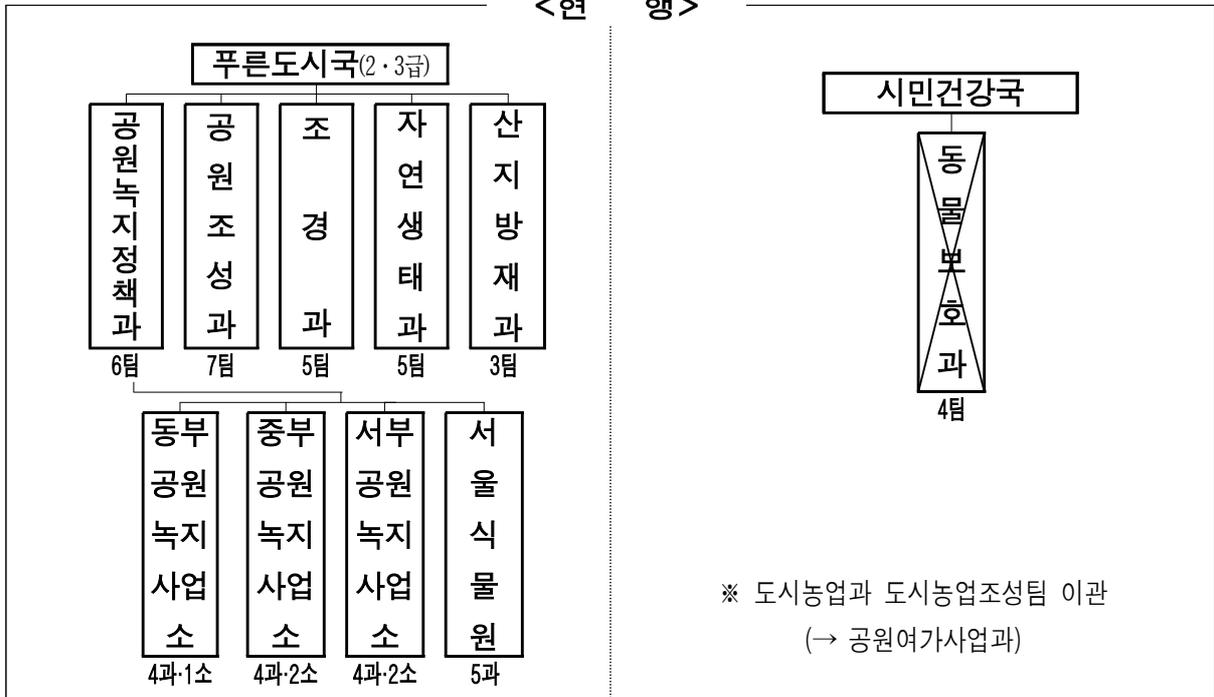
- 이 밖에 광화문 조성을 위한 업무가 대부분 종료되어(8월 개장 예정) ‘광화문광장추진단’ (3·4급)과 ‘광화문광장사업반’ 은 폐지되고, 미완료된 공사는 ‘광화문광장사업과’ 에서 수행함.
- 또한, 잠실 스포츠·MICE 복합공간 조성사업의 협상이 본격화됨에 따라 ‘동남권추진단’ (3·4급)을 신설하고 ‘동남권사업과’ (4팀)를 ‘동남권사업반’ (6팀)으로 확대·재편함.
- 다만, 동남권추진단장의 복수직급 운영을 위해 ‘서부권사업과’ (4팀)와 ‘동북권사업과’ (4팀)보다 업무량이 많은 ‘동남권사업과’ 를 과 단위 조직(4급)보다 권한이 낮은 4·5급 복수직급의 ‘동남권추진반’ (6팀)으로 변경¹¹⁾하는 것은 부서 간 형평성과 업무의 중요도를 고려할 때, 적절한 조직 운영으로 보기 어려움.

(15) 푸른도시국의 확대·개편(안 제19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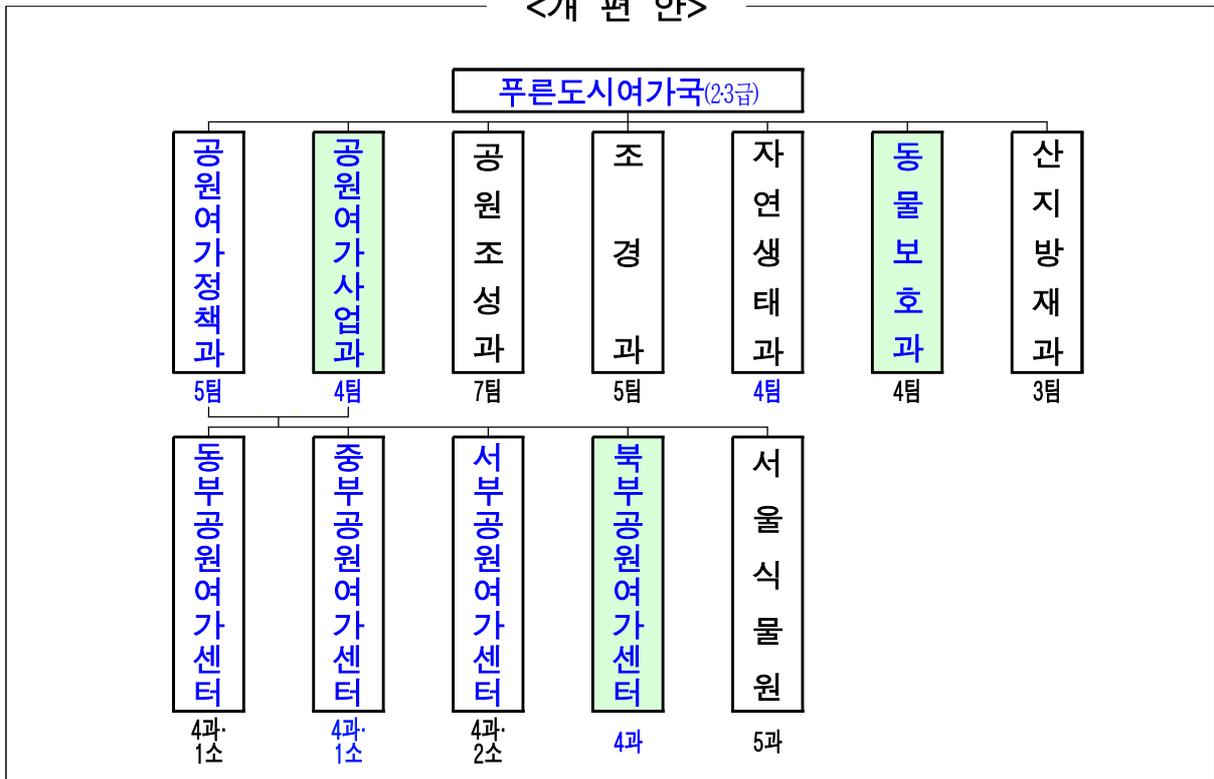
- 푸른도시국은 ‘공원여가사업과’ 와 ‘동물보호과’, ‘북부공원여가센터’ 가 신설되면서 1국 5과 4사업소에서 1국 7과 5사업소로 확대·개편됨.

11)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3·4급 복수직급 부서의 하위조직으로 과 단위 조직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함에 따라 4·5급 복수직급 부서로 운영하는 것임.

<현 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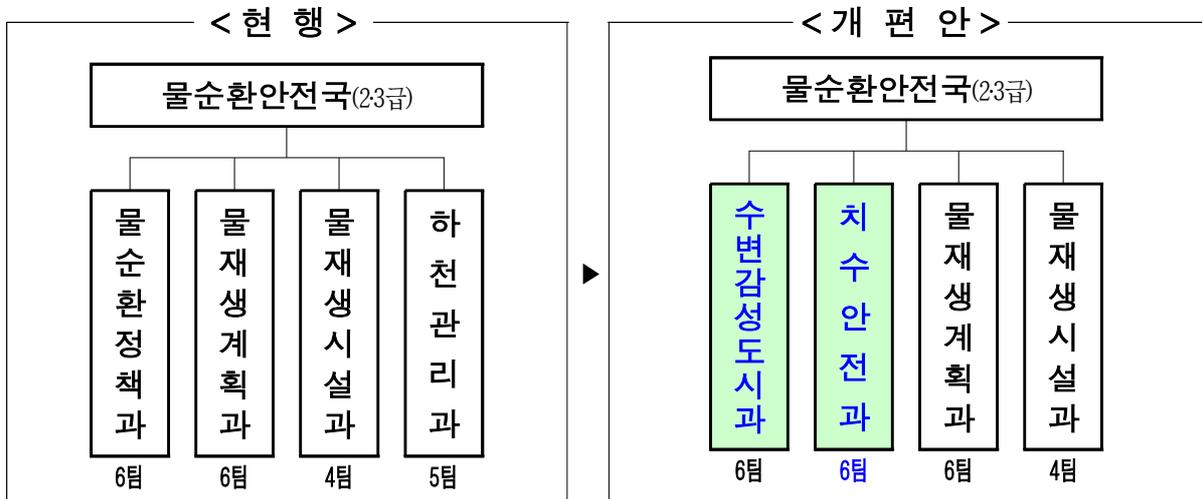
<개 편 안>



- 공원·산림 내 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해 ‘푸른도시국’은 ‘푸른도시여가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공원녹지정책과’와 ‘공원녹지사업소’의 명칭을 ‘공원여가정책과’와 ‘공원여가센터’로 각각 변경함.
- ‘공원여가사업과’는 공원·산림 내 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해 녹지공간 등을 활용한 공원여가 프로그램의 기획·실행과 도시텃밭(도시농업과) 등 여가기능을 이관받음.
- 또한, 현재 4개 사업소별 관리공원 수와 이동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대시민 여가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북부공원여가센터’를 신설함.
- 한편, 시민건강국으로부터 공원 내 반려동물 매개활동을 통한 여가생활 활성화를 위해 동물보호·수의공중보건 업무를 이관받아 ‘동물보호과’를 신설함.
- 하지만, 수의공중보건 업무는 수의사 또는 수의직 공무원 등과 같이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이 요구되어 ‘푸른도시여가국’의 업무로는 적합하지 않으므로 ‘시민건강국’에서 계속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반려동물 놀이터, 반려동물 교육프로그램 등의 반려동물 매개활동 활성화를 위해 부서를 이관받았음에도 ‘동물보호과’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반려동물여가과’ 등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16) 물순환안전국의 재편(안 제20조)

- 물순환안전국은 민선 8기 공약인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조성을 위해 ‘물순환정책과’ 를 ‘수변감성도시과’ 로 재편하고, 풍수해 등 기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물 분야 전반에 대한 안전 관리 기능을 강화 하기 위해 ‘하천관리과’ 를 ‘치수안전과’ 로 재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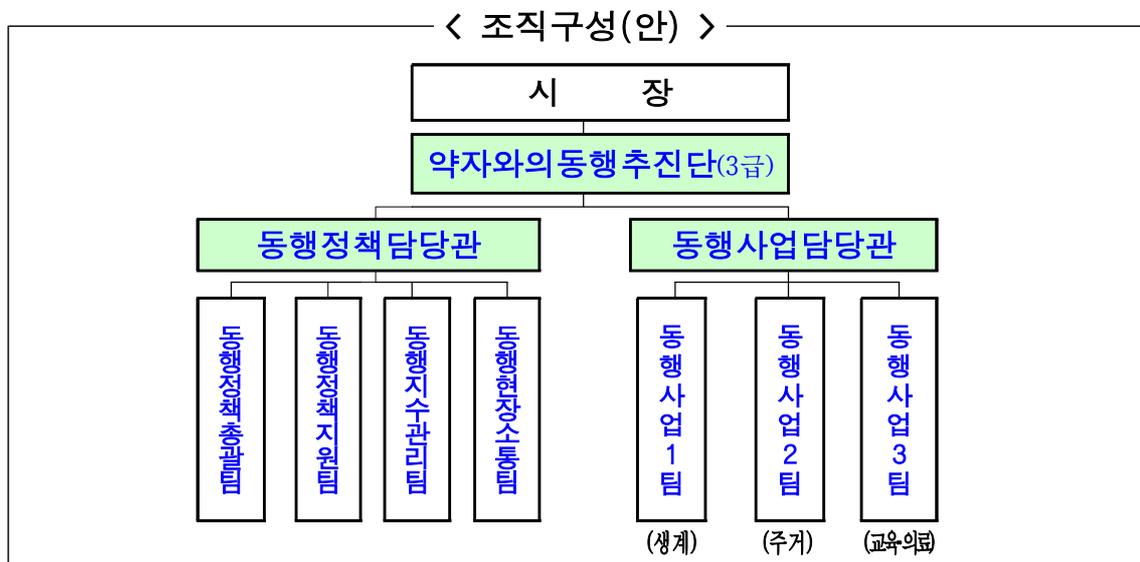


- 행정기관의 명칭은 행정서비스를 제공받는 시민이 해당 기관의 사무와 업무내용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직관성이 떨어지는 ‘수변감성도시과’ 부서 명칭은 보다 알기 쉽게 변경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수변공간의 복합문화공간 기능 강화는 하수도 및 물재생 사무를 핵심으로 하는 물순환안전국의 본래 사무와 거리가 있고, 한강사업 본부에서 유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행정기구가 수행하는 사무의 성질에 맞춰 기능배분의 재조정이 요구됨.

라. 그 외 조직개편안(시행규칙 사항)

(1)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의 신설

- 약자와의동행추진단(3급 이하 “추진단”)은 저소득층, 독거노인, 취약 계층 등 사회적 약자 지원을 강화하고자 시장 직속기구로 신설됨.



- 추진단은 실·국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 정책’을 총괄·조정하고 리드하는 전담조직으로, 관련 신규사업의 발굴과 함께 기존의 사업을 재구조화하고, 약자 동행 지수를 개발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함.
- ‘동행정책담당관’은 총괄 계획 수립과 약자 관련 수치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고, ‘동행사업담당관’은 생계·주거·교육·의료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사업 발굴 업무를 수행함.

- 그러나, 조직 개편안을 살펴보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명확한 정의나 최소한의 범위설정도 없이 조직 형태와 대략적인 기능만을 갖추고 있어 담당 업무와 기능의 명확성, 독자성 확보가 수월해 보이지 않음.
- 또한, 소득 등 수치 기준 이외 다양한 범주의 약자를 사업대상으로 선정할 경우 대상 비대화로 총괄 및 종합관리, 중복기능 간 조정 등 컨트롤타워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명확한 대상 선정과 기준의 마련이 필요함.
- 이 밖에도 부서 명칭에 “약자” 를 사용하게 되면 추진단의 사업 수혜계층 대상이 경제적·사회적 약자로 낙인찍히는 부정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부서명칭에 계층을 차별화하고 이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 한편, 「지방기구·정원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의 성질이나 양이 4개 과 이상의 하부조직이 필요한 경우 ‘국 단위’ 조직을 신설¹²⁾ 할 수 있으나, 추진단은 단 2개 과만을 설치하고 있어 적정 규모의 조직 신설로 보기 어려움.

1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지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기구설치의 일반요건) ① 국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소관 업무의 성질이나 양이 4개 과 이상의 하부조직이 필요한 경우에 설치한다.

(2) 미래공간기획관의 신설

- 대규모 부지에 대한 공간기획과 건축계획을 통합추진하여 시 공간정책의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주택정책실 ‘도시공간기획과’와 ‘공공개발기획단’ (3·4급)을 통합하여 행정2부시장 직속으로 ‘미래공간기획관’ (3급)을 신설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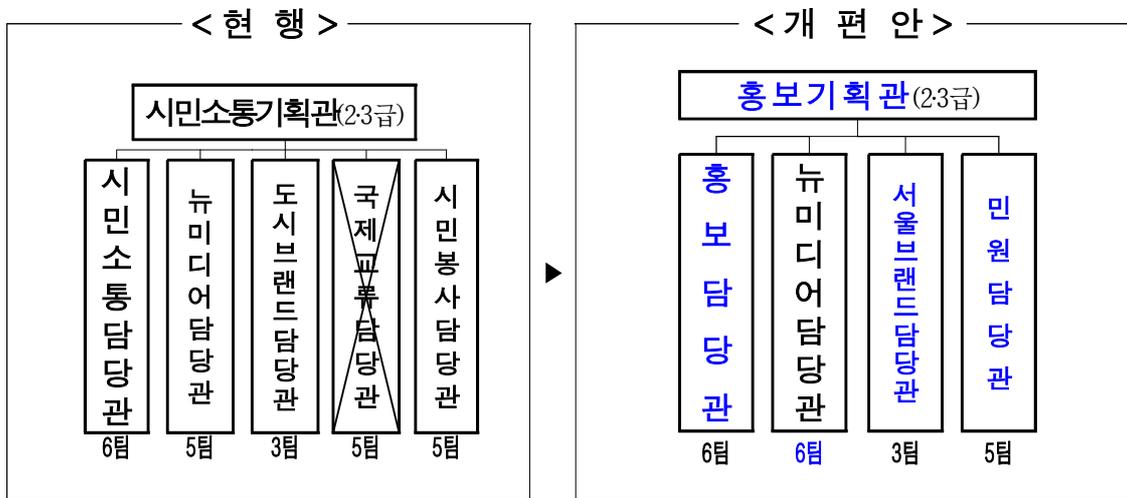


- 미래공간기획관은 도시공간에 대한 기획과 개발사업을 통합 일원화하여 추진함으로써 미래공간정책의 추진동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 다만, 도시계획국, 공공개발기획단, 도시공간기획과 등 서로 다른 편제에 있던 업무와 조직에 인위적이고 기계적인 부서 통·폐합을 실시함으로써 해당 부서들의 혼란이 예상됨.
- 또한, 「지방기구·정원규정」에 따르면, 3급 이상 기구인 국은 4개 과 이상의 하부조직이 요구되나, 미래공간기획단은 3개 과에

불과하여 법령에서 정한 기구설치 요건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3) 시민소통기획관의 축소·개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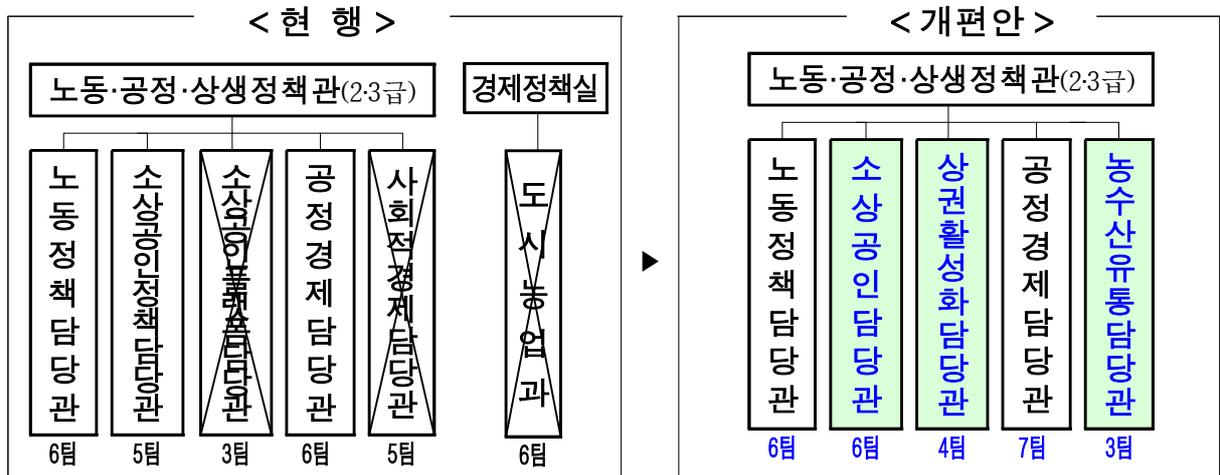
- 시민소통기획관은 명칭을 홍보기획관으로 변경하고, ‘국제교류담당관’을 경제정책실로 이관해 1관 4담당관으로 축소·개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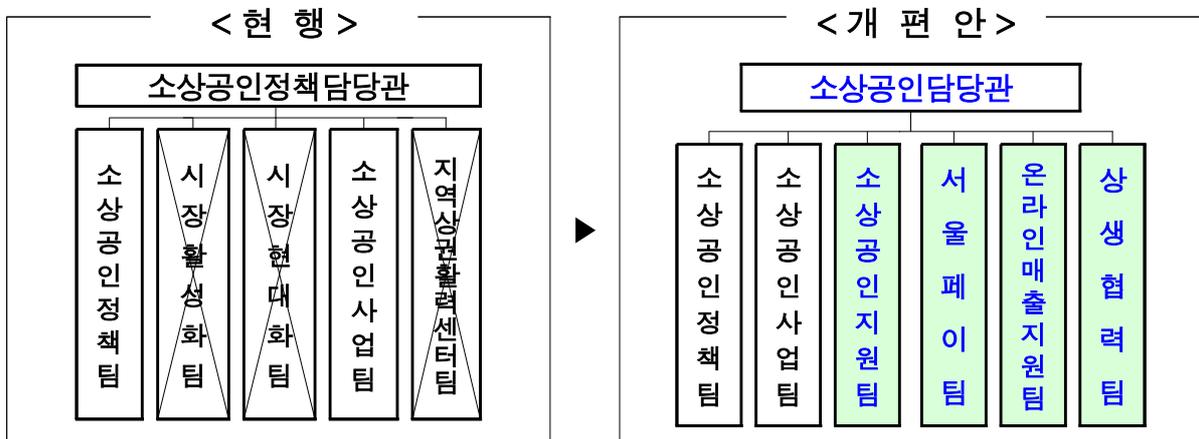
- 부서의 주된 기능을 명칭에 반영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기구 설치목적과 연관성이 적은 ‘국제교류담당관’ (해외 순방 총괄, 외국인 명예시민 관리 등)을 이관함에 따라 보다 전문적인 시정 홍보가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민주주의 서울’ 사이트에서 함께 운영되던 시민참여예산이 기획조정실로 이관됨에 따라 플랫폼 분리가 불가피해진 만큼 공동 관리·운영을 위한 부서 간 유기적 협력이 필요함.

(4)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의 재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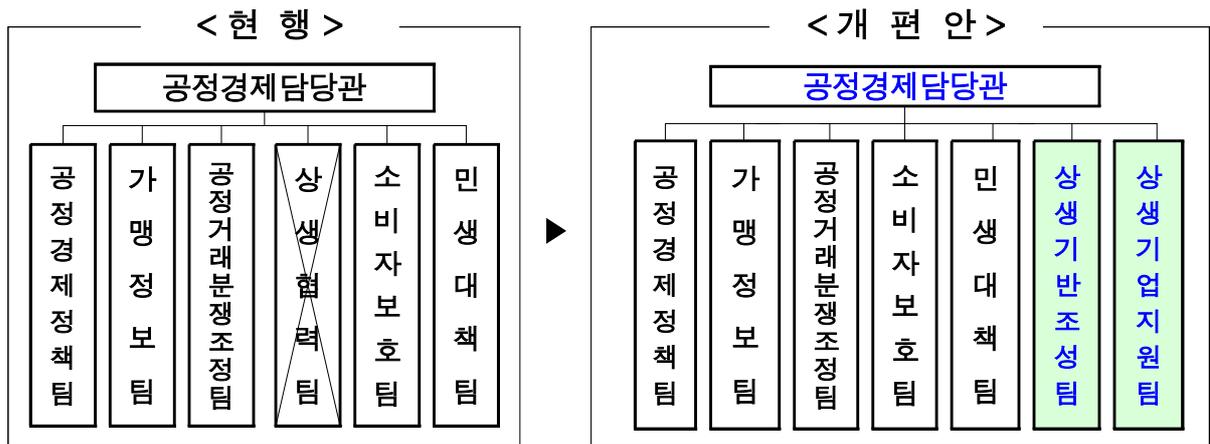
-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등의 상권 활성화를 위한 전담조직인 ‘상권 활성화담당관’을 신설하고 민생분야의 안정과 보호 기능을 강화하고자 기존의 조직체계를 1관 5담당관으로 통합·재편함.



-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의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상권활성화담당관’을 신설함.
- ‘소상공인플랫폼담당관’은 소상공인 온라인플랫폼 구축사업이 안정화됨에 따라 소상공인담당관(6팀)으로 통합·재편됨.



- 사회적기업 정책 방향이 육성에서 자생력 강화로 전환되고, 기업 생태계 내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면서 ‘사회적경제담당관’ (5팀)과 ‘공정경제담당관’ (6팀)을 ‘공정경제담당관’ (7팀)으로 통합함.



- 한편, 경제정책실의 ‘도시농업과’ 업무에서 농수산유통(영농·도매 시장 관리) 기능이 이관되면서 ‘농수산유통담당관’ (3팀)을 신설함.

< 경제정책실 도시농업과 업무 재편 >

(기존) 도시농업과		조직개편	
현 구성	업무	이관 후	업무
도시농업정책팀	도시농업정책 총괄	(농수산유통담당관) 농수산유통정책팀	농수산 유통정책 총괄
도시농업지원팀	도시농업 지원사업 추진	(농수산유통담당관) 농수산유통지원팀	농수산 유통 지원사업 추진
도시농업조성팀	텃밭조성 등 여가사업 추진	(공원여가사업과) 공원시민협력팀	공원·텃밭 등 시민 여가 프로그램 발굴·운영
도매시장관리팀	영농·도매시장 관리·감독	(농수산유통담당관) 도매시장관리팀	영농·도매시장 관리·감독
상생교류팀	지역상생교류 사업 추진	(대외협력과) 지역상생팀	지역상생교류 사업 추진 ※ 업무효율 위해 팀 통합
지역상생팀			

- 그 밖에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중대재해 관련 산업안전관리 업무(노동정책담당관)가 안전총괄실로 일원화되면서 이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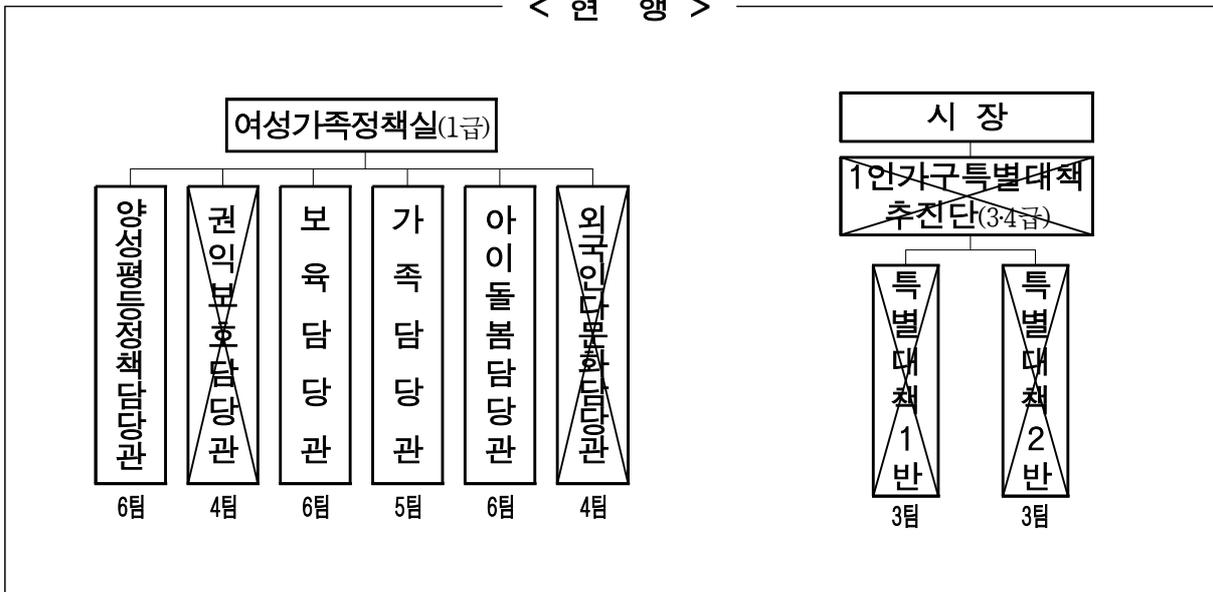
-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민생경제가 어려운 만큼 골목 상권과 전통시장 등의 상권 활성화와 민생분야의 안정·보호 기능을 강화하는 조직개편은 바람직함.
- 다만, 사회적경제의 경우는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 및 자생력 확보, 질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안정적 지원이 필요함에도 조직을 대폭 축소(5팀→2팀)하고 있어 사회적경제 활성화¹³⁾에 역행하고 있음.
- 또한 ‘농수산유통담당관’은 팀 수가 3개에 불과해 「지방기구·정원 규정」에서 정한 기구설치의 일반요건(5급 4명 이상, 12명 이상 정원)에 미달하고 있으므로 소관 업무의 성질과 양의 적정성에 대한 재고가 필요함.

(5) 여성가족정책실의 확대·개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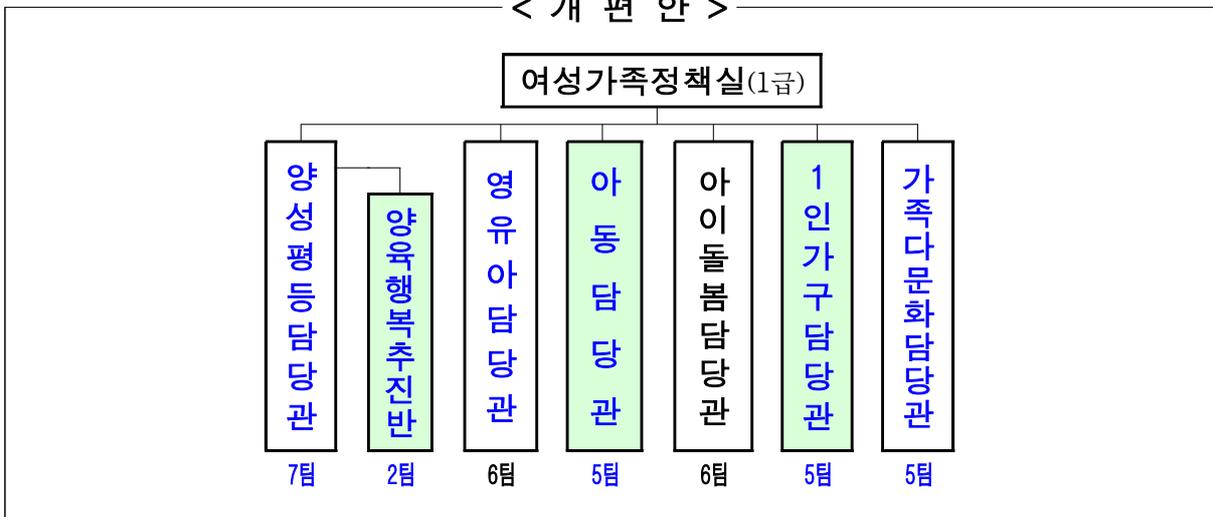
- 여성가족정책실은 저출생시대 영유아아동에 대한 공공의 보육돌봄 기능을 강화하고, 1인가구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 지원을 위해 ‘양육행복추진반’, ‘아동담당관’, ‘1인가구담당관’을 신설하고 ‘권익보호담당관’, ‘외국인다문화담당관’을 폐지하여 1실 6담당관 1반으로 확대·개편함.

13) 서울시의 사회적 경제기업은 2012년보다 ▶ 기업수가 6.5배(‘12 : 819개→‘20 : 5,387개), 매출액은 4배(‘12 : 6,870억원→‘18 : 2조8천억원), 고용은 2.8배(‘12 : 9,300명→‘18 : 26,200명) 늘어나는 등 단기간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였음.

< 현 행 >



< 개 편 안 >



- ‘양육행복추진반’ (4·5급)은 양육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육자의 육아부담과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출산과 육아 활동이 존중받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신설됨.
- ‘보육담당관’의 담당 업무를 지원대상에 따라 세분화하여 ‘영유아담당관’, ‘아동담당관’으로 분리하고 ‘1인가구 특별 대책추진단’ (3·4급)을 ‘1인가구담당관’으로 축소·개편함.

< 여성가족정책실 세부 개편내용 >

현 행	개편안	비고
	양육행복추진반	신설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권익보호담당관	양성평등담당관	권익보호담당관 폐지
보육담당관	영유아담당관	명칭변경
	아이돌봄담당관	서울상상나라 운영 이관
가족담당관	아동담당관	신설, 아동정책 이관
	아이돌봄담당관	키즈카페 운영 이관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	1인가구담당관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 폐지
외국민다문화담당관	가족다문화담당관	가족담당관 통합

- 여성가족정책실의 조직개편은 저출산·핵가족화로 약화된 가족 돌봄 기능을 보완하고 양육공백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조직과 업무를 재편한 것으로 타당성이 인정됨.
- 다만 ‘권익보호담당관’이 ‘양성평등담당관’으로 통합·이관되면서 기존의 성매매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사업이 ‘아동담당관(늘푸른팀)’으로 축소·운영되는 문제가 발생함.
- 아동정책을 위해 신설한 ‘아동담당관’에서 성매매방지 정책 개발과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부서의 기능과 성격에 부합하지 않아 조정이 필요함.
- ‘1인가구 특별대책추진단’ (3·4급)은 2021년 7월, 시장 공약사업의 수행을 위해 신설되고 추경사업을 긴급 편성했으나, 객관적인 성과평가 없이 1년 만에 부서가 폐지됨.

바. 종합의견

- 이번 조직개편안의 ‘작고 효율적인 정부’ 를 지향하는 새 정부의 조직·정원 동결은 기존에 맞춰, 조직과 정원 규모를 늘리지 않으면서 부서 간 기능 조정·재편에 초점을 둬.
- 하지만, 민선 8기 공약사항의 실현을 위해 다양한 사무가 추가됐음에도 축소·폐지되는 사무는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시장 역점사업 이외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와 실무자의 부담이 가중되어 사업이 부실화될 우려가 있음.
- 또한, 부서 고유의 업무와 성격, 기능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업무조정에 따라 이관한 사무 중 일부가 담당 부서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함.
 - 일례로 국제교류 협력 및 국제기구·회의(시민소통기획관→경제정책실), 중장년 일자리 지원(복지정책실→평생교육국), 동물보호·수의보건(시민건강국→푸른도시여가국) 등이 해당됨.
- 한편,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법외 임시기구가 1개로 축소되는 점은 바람직하나 나머지 ‘환경기획관’ 도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하고, 자율신설기구가 승진 적체나 법외 임시기구의 해소를 위한 도구로 잘못 활용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가 요구됨.

- 또한, 「지방기구·정원 규정」의 기구 설치기준을 위반한 경우가 다수 발견되고 있어 조직 관리의 합법성·적정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함.
- 약자와동행추진단(3급, 2개 과), 미래공간기획단(3급, 3개 과), 신속통합기획관(4급, 2팀) 등은 「지방기구·정원 규정」의 기구 설치의 일반요건을 위반하고 있음.
- 그 밖에 잦은 조직 개편으로 인해 내부 조직구성원과 시민이 겪는 혼란도 적지 않은 만큼, 기구의 명칭변경이나 소관업무의 조정보다는 업무성과를 높이는 내실 있는 조직관리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I.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위원 12명, 참석위원 8명, 전원찬성)

※ 부대의견

- ① 도시농업의 조직과 사업의 이관과 축소로 도시농업분야가 위축될 우려가 있으므로 개선 필요.
- ② 푸른도시여가국의 특성상 동물보호과의 수의공중보건 사무를 수행하기

어려우므로 재조정 필요

- ③ 의회사무처 상임위원회 신설로 인한 전문위원실 필요인력과 속기인력의 증원 필요
- ④ 균형발전본부 조직개편으로 서남권 개발사업이 축소·위축되지 않도록 개선 필요
- ⑤ 중장년층 교육, 일자리 등에 대한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분장 사항 조정 필요
- ⑥ 대외협력 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개방형직위 지정 등 전문가 활용 방안 마련
- ⑦ 약자와의 동행추진단(3급, 2개 과), 미래공간기획관(3급, 3개 과), 신속통합기획과(4급, 3개 팀) 등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서 정한 기구 설치의 일반요건에 위반되므로 조속히 시정 필요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참고자료 1]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합의제 행정기관 제외) 현황 >

구 분	직 급	현 행	변 경	비 고	
실·본부·국(18개) <보조기구> ※ 기구정원규정 (대통령령) 별표1	1급(6)	기 획 조 정 실	좌	동	
		경 제 정 책 실	좌	동	
		복 지 정 책 실	좌	동	
		도 시 교 통 실	좌	동	
		안 전 총 괄 실	좌	동	
		주 택 정 책 실	좌	동	
	소방정감(1)	소 방 재 난 본 부	좌	동	
		문 화 본 부	좌	동	
		기 후 환 경 본 부	좌	동	
		행 정 국	좌	동	
		재 무 국	좌	동	
		평 생 교 육 국	좌	동	
		관 광 체 육 국	좌	동	
		시 민 건 강 국	좌	동	
		도 시 계 획 국	좌	동	
		균 형 발 전 본 부	좌	동	
		물 순 환 안 전 국	좌	동	
푸 른 도 시 국	푸 른 도 시 여 가 국			명칭변경	
자율신설기구(3개) ※ 기구정원규정 (대통령령) 제9조의2	3→2·3(1)	복 지 기 획 관 (‘21.7.25.~’23.7.24.)	좌	동	보좌기구
		경 제 일 자 리 기 획 관 (‘21.7.25.~’23.7.24.)	좌	동	보좌기구
	2·3급(1)	시 민 협 력 국 (‘21.7.25.~’23.7.24.)	디 자 인 정 책 관		폐지·신설
기획관(14개) <보좌기구> ※ 기구정원규정 (대통령령) 별표2	1급(1)	여 성 가 족 정 책 실	좌	동	
	2·3급(8)	비 서 실 장	좌	동	
		대 변 인	좌	동	
		비 상 기 획 관	좌	동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좌	동	
		감 사 위 원 회	좌	동	
		정 책 기 획 관	좌	동	
	시 민 소 통 기 획 관	홍 보 기 획 관			명칭변경
	스 마 트 도 시 정 책 관	디 지 털 정 책 관			명칭변경
	3급(5)	재 정 기 획 관	좌	동	
		안 전 총 괄 관	좌	동	
교 통 기 획 관		좌	동		
신 성장 산 업 기 획 관		미 래 공 간 기 획 관			
보 행 진 화 기 획 관	약 자 와 의 동 행 추 진 단				
한시기구 ※ 기구정원규정 (대통령령) 제8조	3급 (2→3개)	남 북 협 력 추 진 단 (‘21.11.1.~’22.10.31.)	주 택 공 급 기 획 관		
		문 화 시 설 추 진 단 (‘21.8.19.~’22.8.18.)	균 형 발 전 기 획 관		
		-	자 원 회 수 시 설 추 진 단		신설
임시기구 (법외기구)	3급 (3→1개)	환 경 에 너 지 기 획 관	환 경 기 획 관		
		주 택 공 급 기 획 관	-		폐지
		균 형 발 전 기 획 관	-		

[참고자료 II]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기구의 설치시 고려사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구를 설치하거나 개편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기구의 목적과 기능의 명확성·독자성·계속성
 2. 기구가 수행하여야 할 사무 또는 사업의 성질과 양에 따른 규모의 적정성
 3. 규모와 기능이 유사한 다른 기관과의 균형성
 4. 주민편의, 행정능률 등을 고려한 효율성
 5. 통솔범위, 기능의 중복유무 등 기구의 능률성
 6. 사무의 위탁가능성
- ② 지방자치단체는 위탁이 가능한 사무나 지방공사·지방공단·지방자치단체조합이나 행정협회의 설립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무에 대하여는 기구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에는 상설의 사무처나 사무국, 과, 담당관을 둘 수 없다. <개정 2021. 12. 16.>

제6조(기구설치의 일반요건) ① 국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소관 업무의 성질이나 양이 4개 과 이상의 하부조직이 필요한 경우에 설치한다.

- ② 실·본부[본부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나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한한다]는 업무의 성질상 국으로서 그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설치한다. 이 경우 실·본부 밑에는 국 또는 과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 6. 29., 2019. 4. 30.>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군·자치구(이하 “시·군·구”라 한다)는 업무의 성질상 과로서는 그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실을 설치한다. <신설 2019. 4. 30.>
- ④ 담당관은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정책의 기획이나 계획의 입안·조사·분석·평가와 행정개선 등에 관하여 기관장이나 보조기관(국장은 제외한다)을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실장 밑에 설치하며, 담당관 밑에는 과를 둘 수 없다. <개정 2019. 4. 30.>
- ⑤ 과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특별한 경우 외에는 12명[시·도는 5급 4명 이상, 시·군·구는 6급 4명 이상 포함] 이상의 정원이 필요한 업무량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한다. <개정 2019. 4. 30., 2021. 1. 5.>
1. 국의 소관 업무(국이 설치되지 아니한 시·군·구의 경우에는 그 소관 사무를 말한다)를 업무의 양이나 성질에 따라 여러 개로 분담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한계가 분명하고 업무의 독자성과 계속성이 있을 것
- ⑥ 지방자치단체의 본청에 설치하는 실·국과 실·과·담당관은 그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부단체장(시의 경우에는 행정부시장을, 도의 경우에는 행정부지사를 말한다)의 지휘·감독 하에 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 4. 7., 2017. 7. 26., 2019. 4. 30., 2020. 3. 10.>
1. 공보기능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직접 보좌하기 위하여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2. 효율적인 재난안전대응을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경우 시

· 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3. 「소방기본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 직속으로 소방본부를 두는 경우

- ⑦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기획기능과 집행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보조·보좌기관인 실·국과 실·과·담당관을 폐지하고 그 폐지된 기관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별도의 사업소를 신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4. 30.>
- ⑧ 실·국 및 과·담당관의 명칭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국은 본부·단·부로, 과·담당관은 팀으로 각각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명칭을 달리 정한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이 영을 적용함에 있어서 실·국 또는 과·담당관으로 본다. <개정 2019. 4. 30.>

제8조(한시기구의 설치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한시기구 설치시에는 기존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 ② 본청에 한시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기존의 보조기관과 담당관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의 중요성과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
- ③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
- ④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⑤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의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

제9조(시·도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도 본청에 두는 실·국·본부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실·국·본부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국·본부의 개편, 명칭변경과 사무분장을 할 때 중앙행정조직과 지방행정조직간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9조의2(시·도의 기구설치기준에 대한 특례) ① 시·도는 별표 1에 따른 시·도의 실·국·본부 설치기준 상한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해당 시·도의 조례로 실·국·본부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는 실·국·본부의 존속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③ 시·도는 제1항에 따라 실·국·본부를 추가로 설치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추가로 설치한 실·국·본부의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존속기간의 연장·삭제 또는 추가로 설치한 실·국·본부의 폐지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④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실·국·본부를 추가로 설치한 경우 그 설치 내용,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및 조치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 ⑤ 제3항에 따른 평가의 항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0조(시·도의 실장·국장·본부장·담당관·과장 등의 직급기준 등) ① 시·도 본청에 두는 실장·국장·본부장·담당관과 과장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기준 등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도 본청에 두는 보조·보좌기관의 직급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시·도의 과·담당관 등의 설치) 시·도 본청에 두는 과·담당관의 설치와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의2(시·도자치경찰위원회) 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기구설치기준과 공무원의 직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구설치기준과 공무원의 직급기준을 정할 때에는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4
----------	----

제출년월일 : 2022년 7월 14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민선8기 서울시정 조직개편 및 시정 핵심과제 추진 역량 강화를 위해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정 핵심사업 추진을 위한 기구 개편 및 소관사무 이관·확대 등 기능 조정

- 기획조정실 내 ‘공공자산 운용’에 관한 사무 신설(안 제5조)
 - ‘시·도간 교류 및 대외협력’ 사무는 기획조정실 → 행정국으로 이관(안 제13조)
- 경제정책실 내 ‘뷰티 산업 육성·지원’,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사무 신설(안 제6조)
 - ‘도시·농촌 간 상생·협력’ 사무는 경제정책실 → 행정국으로 이관(안 제13조)
- 복지정책실 내 ‘안심소득 추진’에 관한 사무 신설(안 제7조)
 - ‘중장년층 경제활동, 사회참여, 교육, 여가 지원’ 등 사무는 복지정책실 → 평생교육국으로 이관(안 제12조)
- 도시교통실 내 ‘미래첨단교통’에 관한 사무 신설(안 제8조)
 - 철도계획 관련 기능 일원화를 위해 ‘도시철도건설 민자유치’에 관한 사무를 도시기반시설본부 → 도시교통실로 이관(안 제52조)
- 기후환경본부 내 건물 온실가스 감축, 친환경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확충, 자원회수시설 건립 추진 등 기능 강화(안 제9조)
- 문화본부 내 ‘문화재 복원·관리’ 기능 강화 및 사무분장 정비(안 제10조)
 - ‘디자인 진흥’ 관련 사무는 문화본부 → 디자인정책관으로 이관(안 제14조의2)

- 시민건강국 내 ‘공공의료 강화·추진’에 관한 사무 신설(안 제12조의2)
 - ‘동물보호 및 수의공중 보건’에 관한 사무는 시민건강국 → 푸른도시여가국으로 이관(안 제19조)
- 행정국 내 ‘지역공동체 지원’, ‘사회협력’, ‘시·도간 대외협력’, ‘남북교류협력’ 등에 관한 사무를 신설하여 각 분야별 협력 기능 일원화(안 제13조)
 - 행정국 내 ‘정보공개·문서·공인·기록물’ 관련 사무 삭제
(행정시스템 운영 기능 일원화를 위해 디지털·정보화 전담 기구로 업무이관)
- 안전총괄실 내 ‘중대재해 예방·안전관리’ 기능 강화, ‘보도관리 및 보도환경 개선’에 관한 사무 신설(안 제15조)
- 주택정책실 내 임대주택·청년주택 등 공급 기능 강화 및 조문정비(안 제16조)
 - ‘주거재생, 주거환경 정비’ 및 ‘한옥 보존·진흥’에 관한 사무를 균형발전본부 → 주택정책실로 이관(안 제18조)
- 녹색여가 시대 전환을 위해 ‘푸른도시국’→ ‘푸른도시여가국’으로 개편(안 제19조)
 - 녹지공간을 활용한 ‘공원여가·문화 프로그램 기획’ 등 관련 사무 신설
- 물순환안전국 내 ‘하천 이용 수변문화공간 조성’ 등 사무분장 정비(안 제20조)
- ‘공원녹지사업소’ → ‘공원여가센터’로 개편하고, 안정적 공원관리 및 대시민 여가서비스 향상을 위해 ‘북부공원여가센터’ 신설(안 제92조 및 제93조, 별표 4)
 - 북부공원여가센터 신설에 따라 각 4개 센터의 위치, 관할구역 조정
- 감사·조사기능 일원화를 위해 인권담당관을 감사위원회 산하로 이관(안 제124조)

나. 자율신설기구 재편 및 존속기한 연장(안 제4조 및 부칙)

- 디자인·도시경관 정책 수립·조정기능 강화를 위해 ‘디자인정책관’ 신설
 - ▶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시민협력국 폐지하고 관련 기능은 기획조정실·행정국 등으로 이관

- 기존 자율신설기구인 경제일자리기획관·복지기획관의 존속기한 연장(2년)
- 다. 주택공급, 권역별 특화발전 및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 등 시정 핵심과제 추진을 위한 한시기구 신설(안 제21조 및 부칙)
- (신설) 주택공급기획관·균형발전기획관·자원회수시설추진단 신설
 - ▶ 행정안전부 협의를 거쳐 존속기한 1년으로 설치
 - (폐지) ‘남북협력추진단’은 존속기한 만료('22.10.31) 예정에 따라 폐지
 - ▶ 관련 기능은 행정국으로 이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 (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한시기구의 설치운영), 제9조의2(시·도의 기구설치기준에 대한 특례)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도 첨부
- (2) 입법예고('22. 7. 7. ~ 7. 11.) 결과: 의견제출 있음
 - (의견제출 75건, 동일내용) 개정안 제12조 중 ‘중장년층 경제활동, 사회참여, 교육, 여가 지원’ 등 사무는 평생교육국으로 이관하지 않고 현 복지정책실 존치 의견(미반영)
 - (의견제출 1건) 개정안 제8조 중 ‘도시철도 민자협상’ 관련 사무는 도시교통실로 이관하지 않고 현 도시기반시설본부 존치 의견(미반영)
 - (의견제출 1건) 개정안 제6조 중 ‘도시농업’ 관련 사무 존치 의견(미반영)
-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별도 첨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경제정책실, 복지정책실, 도시교통실, 문화본부, 기후환경본부, 행정국, 재무국, 평생교육국, 관광체육국, 시민건강국, 안전총괄실, 주택정책실, 도시계획국, 균형발전본부, 푸른도시국, 물순환안전국을”을 “경제정책실, 복지정책실, 도시교통실, 기후환경본부, 문화본부, 관광체육국, 평생교육국, 시민건강국, 행정국, 재무국, 안전총괄실, 주택정책실, 도시계획국, 균형발전본부, 푸른도시여가국, 물순환안전국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민협력국을”을 “디자인정책관을”로 한다.

제5조제1호 중 “서울특별시의회에 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의회, 대정부·국회협력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시정연구에”를 “지방분권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8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제9호부터 제12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시정연구 지원에 관한 사항
8. 공공자산 운용에 관한 사항

제6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2호로 하고, 제4호 중 “도시형제조업 및 패션·봉제산업 육성,지원에”를 “도시형제조업·뷰티·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에”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를 제5호로, 같은 조 제5호를 제7호로, 같은 조 제7호를 제8호로, 같은 조 제8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국제교류·협력, 국제기구·회의에 관한 사항

제7조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안심소득 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4. 어르신복지정책 수립, 어르신복지시설 운영, 장묘행정 및 고령화대책, 어르신 경제활동 및 사회참여, 교육·여가 지원에 관한 사항

제8조제1호 중 “교통제도의 개선 및 도시철도계획에”를 “교통제도의 개선, 도시철도 계획 및 민자유치 계획·협상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및 제7호를 각각 제8호 및 제9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11호를 삭제한다.

4. 교통운영정보시스템(TOPIS) 구축·운영, 교통정보화 및 미래첨단교통에 관한 사항

7. 보행교통환경 개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자전거 정책 및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

제10조를 제9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후·환경계획, 환경협력,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에너지교육에 관한 사항

2. 건물온실가스총량제 및 건물부문 에너지 효율화에 관한 사항

3. 친환경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4. 대기질 개선, 미세먼지 예·경보제, 경유차 저공해화 및 노후 경유차량 운행제한·단속에 관한 사항
5. 에너지 합리화·관리,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분야 협력 등에 관한 사항
6. 폐기물·음식물쓰레기 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
7. 자원회수시설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소음·악취 관리, 생활대기질 관리, 환경분쟁 조정, 청소 및 도로·가로 의 청결 등에 관한 사항

제9조를 제10조로 하고 제10조(중전의 제9조)제1호 중 “시민의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시민의 문화활동 지원 및 종교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로 하며, 제5호(중전의 제6호) 중 “미술관”을 “박물관·미술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중전의 제7호) 중 “박물관”을 “문화시설”로 한다.

2. 문화·예술의 진흥, 문화·예술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3. 문화재 보존정책 수립 및 문화재 활용에 관한 사항
4. 문화재 복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13조를 제11조로 하고, 같은 조(중전의 제13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관광정책의 수립, MICE 진흥 및 지역기반 관광에 관한 사항
2. 융복합 관광산업 진흥 및 관광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제12조의3을 제12조로 하고, 같은 조(중전의 제12조의3)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중전의 제12조의3)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중장년층의 경제활동 및 사회참여, 교육·여가 지원에 관한 사항

제14조를 제12조의2로 하고, 같은 조(중전의 제14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며, 제1호,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중전의 제14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보건, 의무, 약무 등에 관한 사항
3. 시민 정신건강 서비스 증진에 관한 사항
4.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공공의료 강화 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제11조를 제13조로 하고, 같은 조(중전의 제11조)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자치구 행정·재정 지원 업무, 자원봉사 관리, 지역공동체 지원에 관한 사항
5. 사회협력 및 갈등관리에 관한 사항
6. 시·도간 교류 등 대외협력 및 도시·농촌 간 상생·협력에 관한 사항
7. 남북교류 및 사회문화·경제협력, 통일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제12조를 제14조로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의2(디자인정책관) 디자인정책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디자인진흥정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디자인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도시경관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도시빛정책에 관한 사항

제1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안전관리계획, 재난예방·복구대책 수립 및 재난 상황관리에 관한 사항
2.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시민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6. 도로 및 부속시설물 관리, 도로 등 설해 대책, 지하안전관리, 보도관리 및 보도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7. 자동차전용도로 관리, 도로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8. 한강교량 등 교량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제16조제5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제9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역세권 청년주택 등 공급,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계획의 수립·조정·시행에 관한 사항
9. 주거재생정책의 수립·조정·시행, 주거환경 정비에 관한 사항
11.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진흥에 관한 사항

제17조제4호 및 제8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5호(종전의 제6호) 중 “입체도시 조성 등”을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화 등”으로 한다.

제18조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12호를 삭제한다.

3. 도심활성화 및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4. 도시개발 및 시장 정비사업 등에 관한 사항

제19조의 제목 “(푸른도시국)”을 “(푸른도시여가국)”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푸른도시국장”을 “푸른도시여가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7호를 제9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공원·산림 내 여가·문화 기획 및 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한 사항
8. 동물보호 및 수의공중보건에 관한 사항

제2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제4호로 한다.

1. 하천 이용 수변문화공간 조성, 물순환 관리, 토양오염 방지 및 지하수 관리에 관한 사항
2. 하천·유수지의 관리, 풍수해 대책, 수질 보전, 광역 상수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하수도종합계획 수립·조정, 하수도 관련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한시기구) ① 주택공급정책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무를 시행하기 위하여 주택정책실에 한시적으로 주택공급기획관을 두며, 주택공급기획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양질의 공공주택 공급에 관한 사항
2. 민간 정비사업 총괄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② 도시 균형발전에 관한 사무를 시행하기 위하여 균형발전본부에 한시적으로 균형발전기획관을 두며, 균형발전기획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 균형발전 계획 및 도시재생정책의 수립·조정·시행에 관한 사항
2. 도심활성화 및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도시개발 및 시장정비사업 등에 관한 사항

3. 동남권, 동북권, 서부권 등 권역별 개발 등에 관한 사항

③ 자원회수시설 건립·운영 및 자원순환에 관한 사무를 시행하기 위하여 기후환경본부에 한시적으로 자원회수시설추진단을 두며, 자원회수시설추진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폐기물·음식물쓰레기 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

2. 자원회수시설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소음·악취 관리, 생활대기질 관리, 환경분쟁 조정, 청소 및 도로·가로의 청결 등에 관한 사항

제52조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한다.

제14절의 제목 “서울특별시공원녹지사업소”를 “서울특별시공원여가센터”로 한다.

제92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공원녹지사업소(이하 이 절에서 ”사업소“라 한다)를”를 “서울특별시공원여가센터(이하 이 절에서 ”센터“라 한다)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의 “사업소의”를 “각 센터의”로 한다.

제93조 중 “사업소에”를 “센터에”로 한다.

제124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인권보호 및 인권증진 정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별표2 중 “제54조제2항 관련”을 “제56조제2항 관련”으로, 별표3 중 “제72조제2항 관련”을 “제74조제2항 관련”으로, 별표4 중 “공원녹지사업소의”를 “공원여가센터의”로 같은 표 중 “제87조제2항 관련”을 “제92조제2항 관련”으로 하고, 별표4를 다음과 같이 하며, 별표5 중 “제99조제2항 관련”을 “제104조

제2항 관련”으로, 별표6 중 “제105조제2항 관련”을 “제110조제2항 관련”으로 한다.

명 칭	위 치	관할구역
서울특별시중부공원여가센터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231(예장동)	은평구, 종로구, 서대문구, 중구, 용산구
서울특별시서부공원여가센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43-60(성산동)	강서구, 마포구, 양천구,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동작구
서울특별시동부공원여가센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뚝섬로 273(성수동)	성동구 광진구, 강동구,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서울특별시북부공원여가센터	서울특별시 강북구 월계로 173(번동)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 성북구, 동대문구, 중랑구

조례 제7270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자율신설기구의 존속기한)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율신설기구의 존속기한) 제4조제3항의 경제일자리기획관, 복지기획관, 디자인정책관의 존속기한은 2024년 8월 18일까지로 한다.

제3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21조의 주택공급기획관, 균형발전기획관, 자원회수시설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23년 8월 18일까지로 한다.

제4조(타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남북협력추진단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 중 “시민소통기획관”을 “경제정책실장”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시민협력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7호 중 “문화본부장”을 “디자인정책관”으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중 “푸른도시국 국장급 공무원”을 “푸른도시여가국 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⑥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푸른도시국장”을 “푸른도시여가국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4호 중 “푸른도시국장”을 “푸른도시여가국장”으로 한다.

⑦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중 “푸른도시국장”을 “푸른도시여가국장”으로 한다.

⑧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푸른도시국장”을 “푸른도시여가국장”으로 한다.

⑨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도시교통실장”을 “안전총괄실장”으로, “보행친화기획관”을 “안전총괄관”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4조(실·본부·국의 설치)</p> <p>① (생략)</p> <p>② 서울특별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u>경제정책실, 복지정책실, 도시교통실, 문화본부, 기후환경본부, 행정국, 재무국, 평생교육국, 관광체육국, 시민건강국, 안전총괄실, 주택정책실, 도시계획국, 균형발전본부, 푸른도시국, 물순환안전국을 둔다.</u></p> <p>③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에 따라 <u>경제정책실장 밑에 경제일자리기획관을, 복지정책실장 밑에 복지기획관을, 시민협력국을 둔다.</u></p> <p>제5조(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시정의 주요정책 수립 및 조정, 미래시정비전·전략 제시, <u>서울특별시의회에 관한 사항</u></p> <p>2. 조직·정원관리, 민간위탁 및 <u>시정연구에 관한 사항</u></p>	<p>제4조(실·본부·국의 설치)</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경제정책실, 복지정책실, 도시교통실, 기후환경본부, 문화본부, 관광체육국, 평생교육국, 시민건강국, 행정국, 재무국, 안전총괄실, 주택정책실, 도시계획국, 균형발전본부, 푸른도시여가국, 물순환안전국을 --.</u></p> <p>③ ----- ----- ----- ----- <u>디자인정책관을</u> -----.</p> <p>제5조(기획조정실) ----- -----.</p> <p>1. ----- ----- <u>서울특별시의회, 대정부·국회협력에 관한 사항</u></p> <p>2. ----- <u>지방분권에 -----</u></p>

현행	개정안
<p><u><신설></u></p> <p>3. ~ 4. (생략)</p> <p>5. <u>대정부·국회협력, 시·도간 교류 등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u></p> <p>6. ~ 7. (생략)</p> <p><u><신설></u></p> <p>8. ~ 11. (생략)</p> <p>제6조(경제정책실) 경제정책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생략)</p> <p>3. (생략)</p> <p>2. (생략)</p> <p>4. <u>도시형제조업 및 패션·봉제 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u></p> <p>10. (생략)</p> <p>6. <u>도시농업 활성화 및 도시·농촌 간 상생·협력, 농수산물 유통·판로지원에 관한 사항</u></p> <p><u><신설></u></p> <p>5. (생략)</p>	<p>3. <u>시정연구 지원에 관한 사항</u></p> <p>4. ~ 5. (현행 제3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음)</p> <p><u><삭제></u></p> <p>6. ~ 7. (현행과 같음)</p> <p>8. <u>공공자산 운용에 관한 사항</u></p> <p>9. ~ 12. (현행 제8호부터 제11호까지와 같음)</p> <p>제6조(경제정책실) ----- -----.</p> <p>1. (현행과 같음)</p> <p>2. (현행 제3호와 같음)</p> <p>3. (현행 제2호와 같음)</p> <p>4. <u>도시형제조업·뷰티·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에 -----</u></p> <p>5. (현행 제10호와 같음)</p> <p><u><삭제></u></p> <p>6. <u>국제교류·협력, 국제기구·회의에 관한 사항</u></p> <p>7. (현행 제5호와 같음)</p>

현행	개정안
<p>7. (생략)</p> <p>9. (생략)</p> <p>8. (생략)</p> <p>제7조(복지정책실) 복지정책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생략)</p> <p><u><신설></u></p> <p>2. (생략)</p> <p>3. <u>어르신복지정책 수립, 어르신 복지시설 운영, 장묘행정 및 고령화대책에 관한 사항</u></p> <p>4. <u>중장년층(베이비부머 세대 포함) 및 어르신 사회참여, 경제활동, 교육, 여가 지원에 관한 사항</u></p> <p>5. ~ 6. (생략)</p>	<p>8. (현행 제7호와 같음)</p> <p>9. (현행과 같음)</p> <p>10. (현행 제8호와 같음)</p> <p>제7조(복지정책실) 복지정책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현행과 같음)</p> <p>2. <u>안심소득 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u></p> <p>3. (현행 제2호와 같음)</p> <p>4. <u>어르신복지정책 수립, 어르신 복지시설 운영, 장묘행정 및 고령화대책, 어르신 경제활동 및 사회참여, 교육·여가 지원에 관한 사항</u></p> <p><u><삭제></u></p> <p>5. ~ 6. (현행과 같음)</p>
<p>제8조(도시교통실) 도시교통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u>교통정책의 수립, 교통제도의 개선 및 도시철도 계획에 관한 사항</u></p> <p>2. ~ 3. (생략)</p>	<p>제8조(도시교통실) ----- -----.</p> <p>1. ----- <u>교통제도의 개선, 도시철도 계획 및 민자유치 계획·협상에</u> -----</p> <p>2. ~ 3.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u><신설></u></p> <p>4. (생략)</p> <p>6. (생략)</p> <p>8. <u>보행교통환경 개선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u></p> <p>9. <u>자전거 정책,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u></p> <p>5. (생략)</p> <p>7. (생략)</p> <p>10. (생략)</p> <p>11. <u>교통운영정보시스템(TOPIS) 구축·운영 및 교통정보화에 관한 사항</u></p> <p>제10조(기후환경본부) 기후환경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u>환경계획, 환경협력, 저탄소 녹색성장,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사항</u></p> <p>2. <u>대기질 개선, 미세먼지에·경보제, 대기오염물질 관리 및 생활대기질 관리에 관한 사항</u></p> <p>3. <u>기후변화 대응, 친환경자동차</u></p>	<p>4. <u>교통운영정보시스템(TOPIS) 구축·운영, 교통정보화 및 미래첨단교통에 관한 사항</u></p> <p>5. (현행 제4호와 같음)</p> <p>6. (현행과 같음)</p> <p>7. <u>보행교통환경 개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자전거 정책 및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u></p> <p><u><삭제></u></p> <p>8. (현행 제5호와 같음)</p> <p>9. (현행 제7호와 같음)</p> <p>10. (현행과 같음)</p> <p><u><삭제></u></p> <p>제9조(기후환경본부) ----- -----.</p> <p>1. <u>기후·환경계획, 환경협력,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에너지교육에 관한 사항</u></p> <p>2. <u>건물온실가스총량제 및 건물부문 에너지 효율화에 관한 사항</u></p> <p>3. <u>친환경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u></p>

현행	개정안
<p><u>보급 및 온실가스 감축 등에 관한 사항</u></p> <p>4. <u>경유차 저공해화, 노후 경유차량 운행제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등에 관한 사항</u></p> <p>5. <u>에너지행정, 신재생에너지, 에너지합리화, 에너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u></p> <p>6. <u>폐기물 처리, 재활용에 관한 사항</u></p> <p>7. <u>소음·악취 관리, 청소, 음식물쓰레기 처리, 도로·가로의 청결 등에 관한 사항</u></p> <p>8. <u>에너지 분야 시민협력, 에너지공동체 활성화 및 환경·에너지교육 등에 관한 사항</u></p>	<p><u>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u></p> <p>4. <u>대기질 개선, 미세먼지 예·경보제, 경유차 저공해화 및 노후 경유차량 운행제한·단속에 관한 사항</u></p> <p>5. <u>에너지 합리화·관리,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분야 협력 등에 관한 사항</u></p> <p>6. <u>폐기물·음식물쓰레기 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u></p> <p>7. <u>자원회수시설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u></p> <p>8. <u>소음·악취 관리, 생활대기질 관리, 환경분쟁 조정, 청소 및 도로·가로의 청결 등에 관한 사항</u></p>
<p><u>제9조(문화본부) 문화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p> <p>1. <u>문화정책의 수립, 문화기반 조성, 시민의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u></p> <p>2. <u>문화·예술·도서관 및 독서문화의 진흥, 문화단체·예술단체·종교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u></p> <p>3. <u>디자인진흥정책 수립·시행에</u></p>	<p><u>제10조(문화본부) -----</u> -----.</p> <p>1. ----- ---, <u>시민의 문화활동 지원 및 종교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u></p> <p>2. <u>문화·예술의 진흥, 문화·예술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u></p> <p><삭 제></p>

현행	개정안
<p><u>관한 사항</u></p> <p><u>4.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u></p> <p><u><신 설></u></p> <p><u>5. 한양도성 보존·복원·관리 및 세계유산 등재에 관한 사항</u></p> <p><u>6. 미술관 등 건립 및 진흥 등에 관한 사항</u></p> <p><u>7. 박물관 건립 및 진흥 등에 관한 사항</u></p> <p><u>제13조(관광체육국) 관광체육국장</u> 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u>관광정책의 수립 및 관광진흥 기반 조성</u>에 관한 사항</p> <p>2. <u>신규 관광산업분야 육성, MICE 및 융복합관광산업 진흥</u>에 관한 사항</p> <p>3. 4. (생략)</p>	<p><u>3. 문화재 보존정책 수립 및 문화재 활용에 관한 사항</u></p> <p><u>4. 문화재 복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u></p> <p><u><삭 제></u></p> <p><u>5. 박물관·미술관 건립 및 진흥 등에 관한 사항</u></p> <p><u>6. 문화시설 건립 및 진흥 등에 관한 사항</u></p> <p><u>제11조(관광체육국) -----</u> -----.</p> <p>1. <u>관광정책의 수립, MICE 진흥 및 지역기반 관광</u>에 관한 사항</p> <p>2. <u>융복합 관광산업 진흥 및 관광 서비스 개선</u>에 관한 사항</p> <p>3. 4. (현행과 같음)</p>
<p><u>제12조의3(평생교육국) 평생교육국장</u> 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 2. (생략)</p> <p><u><신 설></u></p> <p><u>3. 4. (생략)</u></p>	<p><u>제12조(평생교육국) -----</u> -----.</p> <p>1. ~ 2. (현행과 같음)</p> <p><u>3. 중장년층의 경제활동 및 사회 참여, 교육·여가 지원</u>에 관한 사항</p> <p><u>4. 5.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u></p>

현행	개정안
<p><u>제14조(시민건강국) 시민건강국장</u> 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u>보건, 의무, 약무, 전염병 관리</u> <u>등에 관한 사항</u></p> <p>2. (생략)</p> <p><u><신설></u></p> <p><u><신설></u></p> <p>3.·4. (생략)</p> <p>5. <u>동물보호 및 수의공중 보건에</u> <u>관한 사항</u></p> <p><u><신설></u></p>	<p><u>제12조의2(시민건강국)</u> ----- -----.</p> <p>1. <u>보건, 의무, 약무 등에 관한 사</u> <u>항</u></p> <p>2. (현행과 같음)</p> <p>3. <u>시민 정신건강 서비스 증진에</u> <u>관한 사항</u></p> <p>4. <u>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u> <u>사항</u></p> <p>5.·6.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p> <p><u><삭제></u></p> <p>7. <u>공공의료 강화 정책 수립 및</u> <u>추진에 관한 사항</u></p>
<p><u>제11조(행정국) 행정국장은</u>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 3. (생략)</p> <p>4. <u>자치구 행정·재정 지원 업무,</u> <u>자원봉사 관리에 관한 사항</u></p> <p>5. <u>행정정보공개 제도 운영, 공인</u> <u>및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u></p>	<p><u>제13조(행정국)</u>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자치구 행정·재정 지원 업무,</u> <u>자원봉사 관리, 지역공동체 지원</u> <u>에 관한 사항</u></p> <p><u><삭제></u></p>

현행	개정안
<p><u><신설></u></p>	<p><u>5. 사회협력 및 갈등관리에 관한 사항</u></p>
<p><u><신설></u></p>	<p><u>6. 시·도간 교류 등 대외협력 및 도시·농촌 간 상생·협력에 관한 사항</u></p>
<p><u><신설></u></p>	<p><u>7. 남북교류 및 사회문화·경제협력, 통일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u></p>
<p><u>제12조(재무국) (생략)</u></p>	<p><u>제14조(재무국) (현행 제12조와 같음)</u></p>
<p><u>제14조의2(시민협력국) 시민협력국장</u> <u>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p> <p><u>1. 시민민주주의·시민행복증진 정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u></p> <p><u>2. 시민참여·숙의 예산제 운영 및 계획에 관한 사항</u></p> <p><u>3. 지역공동체 운영 및 계획에 관한 사항</u></p> <p><u>4. 사회협력 증진 및 사회혁신 활성화에 관한 사항</u></p> <p><u>5. 민관협치 정책 및 계획, 갈등관리 계획 및 갈등조정에 관한 사항</u></p>	<p><u>제14조의2(디자인정책관) 디자인정책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p> <p><u>1. 디자인진흥정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u></p> <p><u>2. 디자인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u></p> <p><u>3. 도시경관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도시빛정책에 관한 사항</u></p>

현행	개정안
<p>제15조(안전총괄실) 안전총괄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문화 진흥</u> 2. <u>재난예방, 복구대책 수립 및 재난 상황관리</u> 3. <u>시설물 안전관리 조정, 건설업 관리 및 하도급 개선에 관한 사항</u> 4. · 5. (생략) 6. <u>도로, 도로(부속)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u> 7. <u>도로 등의 설해대책에 관한 사항</u> 8. <u>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u> 	<p>제15조(안전총괄실)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안전관리계획, 재난예방·복구 대책 수립 및 재난 상황관리에 관한 사항</u> 2. <u>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u> 3. <u>시민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u> 4. · 5. (현행과 같음) 6. <u>도로 및 부속시설물 관리, 도로 등 설해 대책, 지하안전관리, 보도 관리 및 보도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u> 7. <u>자동차전용도로 관리, 도로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u> 8. <u>한강교량 등 교량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u>
<p>제16조(주택정책실) 주택정책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2. (생략) 3. <u>신규 주택제도 도입 운영과 가로주택정비사업계획의 수립·조</u> 	<p>제16조(주택정책실)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2. (현행과 같음) 3. <u>역세권 청년주택 등 공급,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계획의 수립·</u>

현행	개정안
<p><u>정·시행에 관한 사항</u></p> <p><u>4. 역세권청년주택·사회주택·공동체주택 등 주택공급에 관한 사항</u></p> <p><u>5. ~ 9. (생략)</u></p> <p><u><신설></u></p> <p>10. (생략)</p> <p><u>11. 공공건축 및 공간환경사업에 관한 사항</u></p> <p><u><신설></u></p> <p>제17조(도시계획국) 도시계획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 3. (생략)</p> <p><u>4. 도시경관계획 수립·조정 및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u></p> <p><u>5. (생략)</u></p> <p><u>6. 입체도시 조성 등 도시공간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u></p> <p><u>7. (생략)</u></p> <p><u>8. 도시빛정책에 관한 사항</u></p>	<p><u>조정·시행에 관한 사항</u></p> <p><u><삭제></u></p> <p>4. ~ 8. (현행 제5호부터 제9호까지와 같음)</p> <p><u>9. 주거재생정책의 수립·조정·시행, 주거환경 정비에 관한 사항</u></p> <p>10. (현행과 같음)</p> <p><u><삭제></u></p> <p><u>11.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진흥에 관한 사항</u></p> <p>제17조(도시계획국) ----- -----.</p> <p>1. ~ 3. (현행과 같음)</p> <p><u><삭제></u></p> <p><u>4. (현행 제5호와 같음)</u></p> <p><u>5.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화 등</u> -----</p> <p><u>6. (현행 제7호와 같음)</u></p> <p><u><삭제></u></p>

현행	개정안
<p>제18조(균형발전본부) 균형발전 본부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p> <p>1. ~ 2. (생략)</p> <p>3. <u>도시환경정비 사업에 관한 사항</u></p> <p>4. <u>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사항</u></p> <p>5. <u>전통시장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u></p> <p>6. <u>주거재생정책의 수립·조정·시행, 주거환경 정비에 관한 사항</u></p> <p>7. <u>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수립·조정·시행에 관한 사항</u></p> <p>8. <u>역사문화도시 관리 및 도심활성화에 관한 사항</u></p> <p>9. ~ 11. (생략)</p> <p>12. <u>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진흥에 관한 사항</u></p>	<p>제18조(균형발전본부)----- -----.</p> <p>1. ~ 2. (현행과 같음)</p> <p>3. <u>도심활성화 및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관한 사항</u></p> <p>4. <u>도시개발 및 시장 정비사업 등에 관한 사항</u></p> <p><삭제></p> <p><삭제></p> <p><삭제></p> <p><삭제></p> <p>5. ~ 7. (현행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와 같음)</p> <p><삭제></p>
<p>제19조(푸른도시국) 푸른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생략)</p> <p><신설></p>	<p>제19조(푸른도시여가국) 푸른도시여가국장은 -----.</p> <p>1. (현행과 같음)</p> <p>2. <u>공원·산림 내 여가·문화 기획 및 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한 사항</u></p>

현행	개정안
<p>2. ~ 6. (생략)</p> <p><신설></p> <p>7. (생략)</p> <p>8. 삭제 <2022.1.13></p> <p>제20조(물순환안전국) 물순환안전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u>수질 보전, 토양오염 방지, 광역 상수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u></p> <p>2. <u>지하수·오폐수 관리에 관한 사항</u></p> <p>3. <u>하수도종합계획 수립·조정</u></p> <p>4. <u>하수도 관련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u></p> <p>5. (생략)</p> <p>6. <u>하천·유수지의 관리, 풍수해 대책에 관한 사항</u></p> <p>제21조(한시기구) ① <u>삭제 <2022.7.11></u></p>	<p>3. ~ 7. (현행 제2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p> <p>8. <u>동물보호 및 수의공중보건에 관한 사항</u></p> <p>9. (현행 제7호와 같음)</p> <p><삭제></p> <p>제20조(물순환안전국) ----- -----.</p> <p>1. <u>하천 이용 수변문화공간 조성, 물순환 관리, 토양오염 방지 및 지하수 관리에 관한 사항</u></p> <p>2. <u>하천·유수지의 관리, 풍수해 대책, 수질 보전, 광역 상수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u></p> <p>3. <u>하수도종합계획 수립·조정, 하수도 관련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u></p> <p><삭제></p> <p>4. (현행 제5호와 같음)</p> <p><삭제></p> <p>제21조(한시기구) ① <u>주택공급정책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무를 시행하기 위하여 주택정책실에 한시적으로 주택공급기획관을 두며,</u></p>

현행	개정안
<p><u><신설></u></p> <p><u><신설></u></p> <p><u>②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사무를 시행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남북협력추진단을 두며, 남북협력추진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p> <p><u>1. 남북교류사업 총괄 및 사회문화교류, 통일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u></p> <p><u>2. 개발 및 경제협력에 관한 사항</u></p> <p><u><신설></u></p> <p><u><신설></u></p> <p><u><신설></u></p> <p><u><신설></u></p>	<p><u>주택공급기획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p> <p><u>1. 양질의 공공주택 공급에 관한 사항</u></p> <p><u>2. 민간 정비사업 총괄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u></p> <p><u>② 도시 균형발전에 관한 사무를 시행하기 위하여 균형발전본부에 한시적으로 균형발전기획관을 두며, 균형발전기획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p> <p><u><삭제></u></p> <p><u><삭제></u></p> <p><u>1. 도시 균형발전 계획 및 도시재생정책의 수립·조정·시행에 관한 사항</u></p> <p><u>2. 도심활성화 및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도시개발 및 시장정비사업 등에 관한 사항</u></p> <p><u>3. 동남권, 동북권, 서부권 등 권역별 개발 등에 관한 사항</u></p> <p><u>③ 자원회수시설 건립·운영 및</u></p>

현행	개정안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제52조(소관사무)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p> <p>1. ~ 4. (생략)</p> <p>5. <u>도시철도건설의 민자유치 계획 수립</u></p> <p>6.·7. (생략)</p> <p>제14절 <u>서울특별시공원녹지사업소</u></p> <p>제92조(설치) ① 법 제127조에 따라 공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 및 도시녹화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 공사의 시행과 녹화자원의 생산공</p>	<p><u>자원순환에 관한 사무를 시행하기 위하여 기후환경본부에 한시적으로 자원회수시설추진단을 두며, 자원회수시설추진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p> <p>1. <u>폐기물·음식물쓰레기 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u></p> <p>2. <u>자원회수시설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u></p> <p>3. <u>소음·악취 관리, 생활대기질 관리, 환경분쟁 조정, 청소 및 도로·가로의 청결 등에 관한 사항</u></p> <p>제52조(소관사무) ----- -----.</p> <p>1. ~ 4. (현행과 같음)</p> <p><삭제></p> <p>5.·6. (현행 제6호 및 제7호와 같음)</p> <p>제14절 <u>서울특별시공원여가센터</u></p> <p>제92조(설치) ① ----- ----- ----- -----</p>

현 행	개 정 안																								
<p>급 등을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u>서울특별시공원녹지사업소(이하 이 절에서 "사업소"라 한다)</u>를 설치한다.</p> <p>② <u>사업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u>은 별표 4와 같다.</p> <p>제93조(소장) <u>사업소에</u> 소장을 두고,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p> <p>제124조(소관사무) <u>감사위원장은</u>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p> <p>1. ~ 9. (생략)</p> <p><u><신설></u></p> <p>[별표2] 상수도사업본부 하부기관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u>제54조제2항</u>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 style="width: 15%;">구분</td> <td style="width: 25%;">사업소명</td> <td style="width: 25%;">위치</td> <td style="width: 35%;">관할구역</td> </tr> <tr> <td colspan="4">(생략)</td> </tr> </table> <p>[별표3] 시립병원의 명칭 및 위치(<u>제72조제2항</u>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 style="width: 50%;">명칭</td> <td style="width: 50%;">위치</td> </tr> <tr> <td colspan="2">(생략)</td> </tr> </table> <p>[별표4] <u>공원녹지사업소의 명칭·</u></p>	구분	사업소명	위치	관할구역	(생략)				명칭	위치	(생략)		<p>----- <u>서울특별시공원여가센터(이하 이 절에서 "센터"라 한다)</u>를 -----.</p> <p>② <u>각 센터의</u> -----.</p> <p>제93조(소장) <u>센터에</u> -----.</p> <p>제124조(소관사무) -----.</p> <p>1. ~ 9. (현행과 같음)</p> <p><u>10. 인권보호 및 인권증진 정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u></p> <p>[별표2] ----- (<u>제56조제2항</u>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 style="width: 15%;">구분</td> <td style="width: 25%;">사업소명</td> <td style="width: 25%;">위치</td> <td style="width: 35%;">관할구역</td> </tr> <tr> <td colspan="4">(현행과 같음)</td> </tr> </table> <p>[별표3] ----- (<u>제74조제2항</u>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 style="width: 50%;">명칭</td> <td style="width: 50%;">위치</td> </tr> <tr> <td colspan="2">(현행과 같음)</td> </tr> </table> <p>[별표4] <u>공원여가센터의</u>-----</p>	구분	사업소명	위치	관할구역	(현행과 같음)				명칭	위치	(현행과 같음)	
구분	사업소명	위치	관할구역																						
(생략)																									
명칭	위치																								
(생략)																									
구분	사업소명	위치	관할구역																						
(현행과 같음)																									
명칭	위치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	---

위치 및 관할구역(제87조제2항 관련)

명 칭	위 치	관할구역
서울특별시중부공원 녹지사업소	(생 략)	종로, 중구, 용산, 도봉, 강북, 노원, 성북, 동대 문, 중랑
서울특별시서부공원 녹지사업소	(생 략)	마포, 영등포, 강서, 양 천, 구로, 금천, 은평, 서 대문
서울특별시동부공원 녹지사업소	서울특별시 동 작구 여의대방 로20길 33(신 대방동)	성동, 광진, 강동, 서초, 강남, 송파, 동작, 관악
<신 설>		

[별표5] 도로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제99조제2항 관련)

구 분	위 치
	(생 략)

[별표6] 물재생센터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105조제2항 관련)

구 분	위 치	관 할 구 역
	(생 략)	

------(제92조제2항 관련)

명 칭	위 치	관할구역
서울특별시중부공원 여가센터	(현행과 같음)	은평구, 종로구, 서대문 구, 중구, 용산구
서울특별시서부공원 여가센터	(현행과 같음)	강서구, 마포구, 양천구,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 구, 관악구, 동작구
서울특별시동부공원 여가센터	서울특별시 성동 구 뚝섬로 273 (성수동)	성동구 광진구, 강동구,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서울특별시북부공원 여가센터	서울특별시 강북 구 월계로 173 (번동)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 성북구, 동대문구, 중랑 구

[별표5] -----
------(제104조제2항 관련)

구 분	위 치
	(현행과 같음)

[별표6] -----
------(제110조제2항 관련)

구 분	위 치	관 할 구 역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라 함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서울특별시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서울특별시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발의·제안 또는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본 조례의 개정 내용은 행정기구 개편에 관한 것으로

기구 개편에 따른 정원 변동 관련 비용추계는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첨부되어 있으므로

별도 비용추계서는 미첨부함

4. 작성자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 (☎ 2133-6729)